

발간등록번호
11-1620031-000003-01

지방의회의원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지방의회의원

##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2007. 12~2008. 12 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광주지역사무소)에서 자체 설문조사 한 내용을 토대로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구결과물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3.

공동연구원 옥경희(광주대학교 교수)  
박미정(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 제1장 조사개요

### 제1절 조사목적

### 제2절 조사의 기본 방향

1. 주요조사 내용
2. 조사체계

### 제3절 표본 설계

1. 표본추출방법의 개요
2. 표본 틀

### 제4절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방법

1. 자료 수집방법
2. 자료 분석
3. 분석방법

### 제5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 경제적 특성

##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 제1절 인권의식 관련

1. 우리 지역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2. 우리 지역사회 인권상황의 개선정도
3.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중복응답)
4. 지역사회에서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중복응답)

---

5.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 인지정도와 장소

제2절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1. 우리사회의 인권현안과 정책
2. 우선적 보호가 필요한 현안

제3절 인권문제 유형에 대한 인식

1.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2. 차별유형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3. 지역사회에서의 차별유형(중복응답)
4.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중복응답)

제4절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1. 인권교육의 형식
2. 인권교육이 우선 필요한 집단(중복응답)

제5절 인권침해 관련 현안

1.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2.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율
  - 수감자 인권보호 비율
  - 경찰의 불신검문에 대한 허용정도
  - 종교재단 학교에서의 종교의식 의무화에 대한 비율
  - 시위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비율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인식 비율
  - 학교에서 학생 소지품검사 허용정도비율
  - 학교 체벌 허용정도 비율
  -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의 비율

제6절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1.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2. 차별현안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 인식비율
    -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의 의무화 정도
    - 비정규직 대우문제
    - 장애인용 시설설치를 위한 세금감수 허용정도
    - 나이제한의 부당성
    - 장애인에 대한 혜택정도
-

- 
-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혜택정도
  - 출신학교 차이 인정정도
  - 여성할당제 인정정도
  - 동성애자 인정정도

#### 제7절 지방자치 단체별 인권 관련 의회 활동에 관한 내용

1. 지역차원의 인권조례 존재 여부 관련 사항
2. 지역차원의 인권조례 관련활동

#### 제8절 국제결혼 지원 조례 사항

1. 국제결혼 비용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 제9절 차별금지법에 관한 사항

1. 차별 금지법에 관한 생각
2. 지역차원의 인권지표 및 인권보장 수준에 관한 견해

#### 제10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에 대한 인식

1. 지역사무소의 위상에 대한 인지정도
2.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지역문제의 대응방안
3. 국가인권위원회 인지정도
4. 상담전화 인지여부와 경로
5.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 제 3 장 결 론 및 제 언

### ■ 부 록

인권의식조사 설문지(지방자치 단체 지방의회 의원용)

---

## 표 목차

- <표1-1> 주요조사 내용
- <표1-2> 조사체계
- <표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 <표1-4> 경제적 특성
- <표2-1>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
- <표2-2> 지역사회 인권상황 1년 전과 비교
- <표2-3>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나는 곳-성별, 소득 (1순위)
- <표2-4>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나는 곳-성별, 소득 (2순위)
- <표2-5>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나는 곳-연령, 출신지역(1순위)
- <표2-6>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나는 곳-연령, 출신지역(2순위)
- <표2-7>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 (1순위)
- <표2-8>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 (2순위)
- <표2-9>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 인지여부
- <표2-10>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
- <표2-11> 논란 중인 인권현안
- <표2-12> 인지하고 있는 정책 현안
- <표2-13>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안
- <표2-14> 인권침해의 유형 (1순위)
- <표2-15> 인권침해의 유형 (2순위)
- <표2-16> 지역사회 일어나는 차별 (1순위)
- <표2-17>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 (2순위)
- <표2-18> 차별유형 (1순위)
- <표2-19> 차별유형 (2순위)
- <표2-20> 구제수단 (1순위)
- <표2-21> 구제수단 (2순위)
- <표2-22> 인권교육 관련
- <표2-23>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 (1순위)
- <표2-24>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 (2순위)
- <표2-25> 인권침해 의식에 대한 평균비교
- <표2-26> 인구사회학적과 인권침해인지정도 특징
- <표2-27> 인권침해관련 현안에 대한의식
- <표2-28>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대한 의식
- <표2-29> 경찰 불신검문에 대한 허용정도
- <표2-30> 종교재단 학교에서 종교의식 의무화 허용정도

- 
- <표2-31> 시위나 집회의 자유정도
  - <표2-32> 사형제도 폐지
  - <표2-33>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체벌에 대한 허용정도
  - <표2-34>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 <표2-35> 학교에서의 학생소지품 검사에 대한 허용정도
  - <표2-36>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 <표2-37>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의 의무설치
  - <표2-38> 비정규직 대우문제
  - <표2-39>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를 위한 세금 및 요금인상
  - <표2-40> 직원 채용 시 나이제한의 부당성
  - <표2-41>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 <표2-42>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 <표2-43> 여성할당제
  - <표2-44> 출신학교 차이 인정
  - <표2-45> 동성애자 사회적 인정
  - <표2-46> 인권침해나 차별적인 내용의 조례 존재 여부
  - <표2-47> 인권침해 또는 차별적인 조례나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
  - <표2-48> 지역차원의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 <표2-49> 지역차원의 인권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
  - <표2-50> 인권조례가 필요한 대상
  - <표2-51> 국제결혼비용 지원 조례에 대한 견해
  - <표2-52> 국제결혼 비용 조례가 필요한 이유
  - <표2-53> 국제결혼 비용 조례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
  - <표2-54>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
  - <표2-55>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지표 및 인권보장 대한 연구
  - <표2-56> 광주지역사무소의 지위
  - <표2-57> 지역사무소가 하는 일
  - <표2-58> 지역사무소의 대응방안
  - <표2-59> 정보경로
  - <표2-60> 상담전화 인지여부
  - <표2-61> 상담전화 인지경로
  - <표2-62> 지역사무소의 할 일
  - <표2-63>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
  - <표2-64> 확대되어야 할 활동
-



□□

□□



---

## 제 1 장 조사 개요

---

---

---

# 제1장 조사개요

## 제1절 조사목적

인권(人權)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개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어왔다. 우리사회에서 ‘인권’을 말하면 사회를 비판하는 것,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거나 어지럽히는 것 등의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 때문이며, 어느 곳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광주·부산·대구지역사무소가 설립되면서 우리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민주적·반인권적 문화의 청산과 인간다운 삶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아동,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생활시설 인권현황을 파악하는 활동들이 전개됐음에도,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의 긴박함, 돌발 상황 이에 대한 우선대응 등의 현실적 어려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들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는 현안 인권 문제들을 기대한 만큼 개선하지 못하고 부분적·일시적 활동에 그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지역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권수준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수요소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설립이후의 활동들을 점검하고, 지역사무소의 향후방향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지방정치 시대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을 알아보고, 지역사회의 상황에 기반 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조사를 기획하였다.

**본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인 지방자치 단체의 의원들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의식수준 및 인권현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 ▲ 지역 내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인권관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현안 및 인권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 ▲ 지방자치 단체 의원들의 지역 내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및 인권문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 ▲ 지역 내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지역 내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및 인권문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광주지역사무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 ▲ 지역사무소 개소 3년의 시점에서 지역사무소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지역사무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 조사시점에서 지방의원들의 인권수준을 파악하고, 인권수준 개선을 위한 대안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 지역의 기존 각종 실태조사와 실증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인권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제2절 조사의 기본 방향

### 1. 주요조사 내용

<표 1-1> 주요조사 내용

조사 내용	광주·전남·북·제주지역 지방의회 의원들	
◎ 인권의식 관련 1. 우리 지역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2. 우리 지역사회 인권상황의 개선 정도 3.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 4. 지역사회에서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 5.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 인지정도와 장소	◎	◎
◎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1. 우리사회의 인권현안과 정책 2. 우선적 보호가 필요한 현안	◎	◎
◎ 인권문제 유형에 대한 인식 1.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인식 2. 차별유형에 대한 인식 3. 지역사회에서의 차별유형 4.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	◎	◎
◎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1. 인권교육의 형식 2. 인권교육이 우선 필요한 집단	◎	◎
◎ 인권침해와 관련한 현안 1.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2.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율	◎	◎
◎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1.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2.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비율	◎	◎
◎ 지방자치 단체별 인권 관련 의회 활동에 관한 내용 1. 지역차원의 인권조례 존재 여부 관련 사항 2. 지역차원의 인권조례 관련활동	◎	◎
◎ 국제결혼 지원 조례 관련 사항 1. 국제결혼 비용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	◎
◎ 차별 금지법에 관한 사항 1. 차별 금지법에 관한 생각 2. 지역차원의 인권지표 및 인권보장 수준에 관한 견해	◎	◎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에 대한 인식 1. 지역사무소의 위상에 대한 인지정도 2.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지역문제의 대응방안 3. 국가인권위원회 인지정도 4. 상담전화 인지여부와 경로 5.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	◎

## 2. 인권침해와 차별경험에 대한 지표

### -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

○ 인권침해 현안과 관련된 문항은 8개로, 그간에 우리사회에서 쟁점화 되었거나, 되고 있는 또는 가능성이 있는 현안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현안을 5점 리커트 척도화 해서, 인권관련 경력 5년 이상의 실무자 8인, 법학연구자 3인, 대학원 박사과정 6인 (총 21명)에게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만을 검증 받았으며, 일반인 10인, 학생 20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7인(총 37명)에게 사전 테스트만을 실시하였고, 표준화되지 않는 척도임을 밝힘. 이는 앞으로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을 밝히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이를 “인권침해에 대한 인지척도”라 명명하고 사용하였음.

### - 차별이란 특정한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

○ 차별 현안과 관련된 문항은 9개로, 그간에 우리사회에서 쟁점화 되었거나, 되고 있는 또는 가능성이 있는 현안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현안을 5점 리커트 척도화 해서, 인권관련 경력 5년 이상의 실무자 8인, 법학연구자 3인, 대학원 박사과정 6인 등 총 21명에게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만을 검증 받았으며, 일반인 10인, 학생 20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7인 등 총 27명에게 사전 테스트만을 실시하였고, 표준화되지 않는 척도임을 밝히며, 이는 앞으로 인권의식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편의상 사용했음을 밝힘.

## 3. 조사체계

<표 1-2> 조사체계

조사대상	광주·전남·북·제주지역 지방의회 의원들
유효 응답자수	광주·전남·북·제주지역 지방의회 의원 전체
조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조사방법	설문지 조사 개별면접 전화설문
실사수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 제3절 표본 설계

### 1. 표본추출방법의 개요

- ▲ 본 조사는 광주·전남·북 및 제주지역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
- ▲ 광역의원 광주광역시 19명, 전라남도 51명, 전라북도 38명, 제주특별자치도 41명이며, 기초의원 광주광역시 197명, 전라남도 68명, 전라북도 197명이다.

### 2. 표본 틀

- ▲ 본 조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관할지역인 광주·전남·북·제주지역의 지방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 틀을 마련하여 전체 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140부를 분석하였음.

## 제4절 자료수집 절차 및 자료처리 방법

### 1. 자료수집 과정 및 절차

- ▲ 추진과정
  - 2007년 8월~11월 : 지방의원 인권의식 실태조사 계획.
  - 2007년 12월 11일 : 지방의원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위한 내용과 일정 확정.
  - 2007년 12월 26일 : 설문작성요청(1차) - 45개 의회사무처(과), 656명 의원 자택으로 발송함(2008년 1월10까지 도착하도록 요청함).
  - 전남·북·제주지역은 의원자택으로 개별 발송하였으며, 설문은 의회사무처에 제출, 의회에서 일괄 통보협조토록 병행 실시함.
  - 광주광역시 의회, 광주광역시 기초의회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취합.

## 2. 자료 분석

- 자료검증과 전화보완조사를 거친 최종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통계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

## 3. 분석방법

- 빈도분석
- 기술통계 분석
- 상관검사
-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 제5절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 1. 인구사회학적 특징

- 광주·전남·북·제주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표 1-3>과 같다.
- 전체 응답자 141명 중 남자 115명(81.6%), 여자 21명(14.9%), 무응답 5명(3.5%)로 남녀의 차이는 남자가 94명(66.7%)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남자가 월등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 종교는, 응답자 141명중 기독교 48(34.0%), 없음 31명(22.0%), 불교 23명(16.3%), 가톨릭 17명(12.1%)등이다. 이를 다시 종교의 유·무로 합산하면 있음 94명(66.6%), 없음 31명(22.0%)이다.
- 혼인상태에서는, 응답자 141명 중 기혼 134명(95.0%), 미혼 1명(0.7%), 이혼 1명(0.7%), 사별 1명(0.7%), 기타 1명(0.7%)로 나타남. 이를 혼인 유·무로 합산하면 기혼 136명(96.4%), 미혼 1(0.7%)이다.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은, 응답자 141명 중 대졸 67명(47.5%), 고졸 38명(26.9), 대학원(석사) 16명(11.3), 중졸 7명(5.0%), 기타 6명(4.3%), 대학원(박사) 3명(2.1%)이다. 이는 광주·전남·북·제주지역 지방의원들의 경우, 74.4%인 105명이 고졸이상이며 대학원 석사이상의 학력도 13.4%(9명)로 나타났다.
- 연령은, 응답자 141명 중 30대 4명(2.8%), 40대 42명(29.8%), 50대 59명(41.8%), 60대 28명(19.9%), 70대 8명(5.7%)이다. 광주·전남·북·제주지역 지방의원들의 경우, 30대~40대가 32.6%(46명), 50~60대가 61.7%(87명)로 가장 많고, 70대도 5.7%(8명)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경우 생활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조직적 기반을 바탕으로 출마하고, 당선되어도 생활정치 실현 정신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생활기반이 튼튼하거나 지역민의 정서와 생활 연륜 등이 선거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응답자 140명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광주 20명(25%), 전북 43명(30.5%), 전남 62명(44.0%), 제주 8명(5.7%), 무응답 8명(5.6%)로 나타났다.
-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지방의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종합하면, 지방의원 80% 이상이 남성이며, 66.6%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96% 이상 기혼자이며, 87.8%가 고등학교 졸업이상이며, 91.5%가 40대 이상으로 이 중 50대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인구사회학적 특징 (단위: 명, %)

구 분		빈도(%)
성 별	남	115(81.6)
	여	21(14.9)
	무응답	5(3.5)
	합 계	141(100)
종 교	기독교	48(34.0)
	불 교	23(16.3)
	카톨릭	17(12.1)
	유 교	2(1.4)
	원불교	4(2.8)
	없 음	31(22.0)
	기 타	16(11.4)
	합 계	141(100)
혼 인	기 혼	134(95.0)

상 태	미 혼	1(0.7)
	이 혼	1(0.7)
	사 별	1(0.7)
	기 타	1(0.7)
	무응답	4(2.8)
	<b>합 계</b>	<b>141(100)</b>
학 력	중졸	7(5.0)
	고졸	38(26.9)
	대졸	67(47.5)
	대학원(석사)	16(11.3)
	대학원(박사)	3(2.1)
	기타	6(4.3)
	무응답	4(2.8)
	<b>합 계</b>	<b>141(100)</b>
연 령	20대	-
	30대	4(2.8)
	40대	42(29.8)
	50대	59(41.8)
	60대	28(19.9)
	70대 이상	8(5.7)
	<b>합 계</b>	<b>141(100)</b>
출 신 지 역	광 주	20(14.2)
	전 북	43(30.5)
	전 남	62(44.0)
	제 주	8(5.7)
	무응답	8(5.6)
	<b>합 계</b>	<b>141(100)</b>

## 2. 경제적 특징

- 응답자의 경제적 특징은 <표 1-4>와 같다.
- 광주·전남·북·제주지역 지방의원들의 경제적 특징은, 월 소득 200~349만원 75명 (53.2%), 350~400만원 이상 47명(33.3%)이다.
- 2007년부터 지방의원들이 한 해 받아가는 연봉(의정비)은 광역시도가 평균 5294만원, 시군구가 3833만원이다(2008.07.23 17:36 <http://www.daum.net>). 지방의원직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연봉 직종이 된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199만원으로 응답한 의원이 11명(7.8%)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연봉의 내용이 110만원은 의정활동비이며, 110만원은 월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 4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한 의원들의 비율이(24.1%)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겸직 및 직업의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표 1-4> 경제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빈도(%)
소득	100만원 미만	-
	100~149만원	3(2.1)
	150~199만원	8(5.7)
	200~249만원	29(20.6)
	250~299만원	22(15.6)
	300~349만원	24(17.0)
	350~399만원	13(9.2)
	400만원 이상	34(24.1)
	기 타	2(1.4)
	무응답	6(4.3)
	합 계	141(100)



□□

□□



---

## 제2장 조사결과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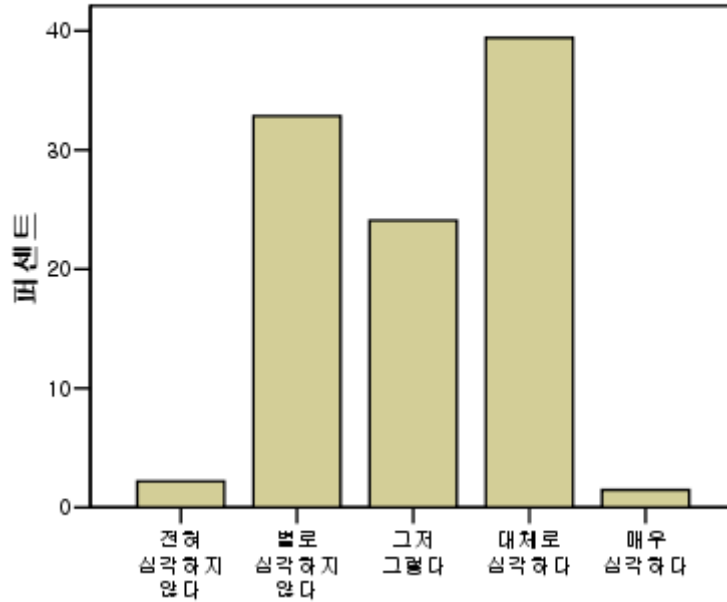
## 제2장 조사결과 요약

### 제1절. 인권의식 관련

#### 1. 지역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의 심각성 인식정도에 대한 응답을 합계한 결과는 <표2-1>과 같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 심각성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56명(40.9%), 그저 그렇다 33명(24.1%), 심각하지 않다 48명(35.0%)이다.
- 이를 성별, 수입, 연령, 출신지역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여성의 원(52.4%), 남성의원(39.3%)로 여성이 남정보다 13.%가 높았다.
- 수입에서는 350~399만원(61.5%), 250~299만원(59.1%), 20~249만원( 41.4%)순이며, 연령대에서는 30대(75%), 40대 (57.5%), 50대(36.5%)이다.
- 연령에서는, 심각하지 않다 60대 (57.1%), 70대(57.2%)로 지역사회 인권문제 심각성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연령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고령화로 갈수록 인권문제에 대해 심각하지 않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차에서 오는 사회 문화적 경제적 경험들이 다르고, 시대상황과 현실인식에 대한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사회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지역별로 교차분석 하였더니, 광주(50%), 전북(46.5%), 전남(33.9%), 제주(33.3%)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설문지 조사 당시 인화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해결 노력들이 진행되므로 인해 지역차원의 이슈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인권문제심각성



<표2-1>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

구 분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전체(%)		3(2.2)	45(32.8)	33(24.1)	54(39.4)	2(1.5)
성별 (n=133)	남(%)	2(1.8)	38(33.9)	28(25.0)	43(38.4)	1(0.9)
	여(%)	1(4.8)	4(19.0)	5(23.8)	10(47.6)	1(4.8)
소득 (n=131)	100~149만원(%)	0(0.0)	1(33.3)	1(33.3)	0(0.0)	1(33.3)
	150~199만원(%)	0(0.0)	3(42.9)	2(28.6)	2(28.6)	0(0.0)
	200~249만원(%)	1(3.4)	7(24.1)	9(31.0)	12(41.4)	0(0.0)
	250~299만원(%)	0(0.0)	7(31.8)	2(9.1)	13(59.1)	0(0.0)
	300~349만원(%)	1(4.5)	7(31.8)	7(31.8)	7(31.8)	0(0.0)
	350~399만원(%)	0(0.0)	1(7.7)	4(30.8)	8(61.5)	0(0.0)
	400만 원 이상(%)	0(0.0)	15(44.1)	7(20.6)	11(32.4)	1(2.9)
연령 (n=137)	30대(%)	0(0.0)	0(0.0)	1(25.0)	3(75.0)	0(0.0)
	40대(%)	0(0.0)	8(20.0)	9(22.5)	23(57.5)	0(0.0)
	50대(%)	0(0.0)	20(34.5)	15(25.9)	21(36.2)	2(3.4)
	60대(%)	2(7.1)	14(50.0)	7(25.0)	5(17.9)	0(0.0)
	70대 이상(%)	1(14.3)	3(42.9)	1(14.3)	2(28.6)	0(0.0)
출신 지역 (n=132)	광주(%)	0(0.0)	4(20.0)	6(30.0)	10(50.0)	0(0.0)
	전북(%)	2(4.7)	12(27.9)	9(20.9)	20(46.5)	0(0.0)
	전남(%)	1(1.7)	20(33.9)	16(27.1)	20(33.9)	2(3.4)
	제주(%)	0(0.0)	2(66.7)	0(0.0)	1(33.3)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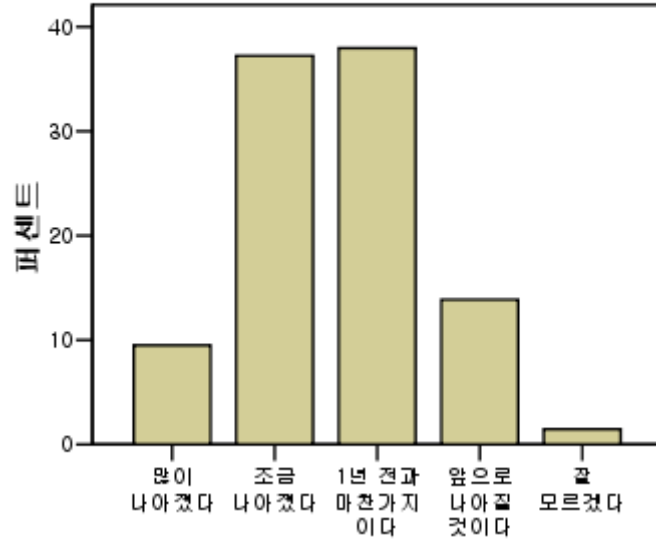


## 2. 지역사회 인권상황의 개선 정도

- 최근 2년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의 개소(2005. 10. 12)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힘.
- 최근 2년간 인권상황의 개선도 평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이다 52명(38%), 조금 나아졌다 51명(37.2%),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19명(13.9%)로 나타났다.
- 이를 성별, 수입, 연령, 지역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는, 최근 2년간 인권상황의 개선도 평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2>와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3명 중 남성의원(47.8%), 여성의원(40%)로 남·여 의원 간에는 17.8%로 남성의원이 인권문제 개선에 대해 1년 전에 비해 더 많이 나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수입에서는 전체 응답자 131명 중 200~249만원(58.6%), 250~299만원(45.5%), 400만원 이상(45.5%), 300~349만원(43.4%)으로 나타난 반면, 100~149만원(66.7%), 150~199만원(57.1%)로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응답하였다. 대체적으로 200만원대의 소득수준인 의원들은 지역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도가 나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100만원대 소득수준인 의원들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이거나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 전체 응답자 137명을 연령대 별로 살펴본 결과는, 60대(51.8%), 50대(50%), 40대(44.5%)순으로 지역사회 인권상황이 2년 전 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30대(50%)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응답하였고, 40대(56.1%)가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인권문제를 예민하게 인식하지 않거나 인생 경험에서 볼 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응답자 132명 중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62.5%), 전북(50%), 광주(50%), 전남(40%) 순으로 지역사회 인권문제가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나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전북 40%, 전남 43.3%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에 대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후속연구를 통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과비교정도



<표2-2> 지역사회 인권상황 1년 전과 비교

구분		많이 나아졌다	조금 나아졌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9.5)	51(37.2)	52(38.0)	19(13.9)	2(1.5)
성별 (n=133)	남(%)	11(9.7)	43(38.1)	43(38.1)	14(12.4)	2(1.8)
	여(%)	2(10.0)	6(30.0)	8(40.0)	4(20.0)	0(0.0)
소득 (n=131)	100~149만원(%)	1(33.3)	0(0.0)	2(66.7)	0(0.0)	0(0.0)
	150~199만원(%)	0(0.0)	2(28.6)	4(57.1)	1(14.3)	0(0.0)
	200~249만원(%)	4(13.8)	13(44.8)	8(27.6)	4(13.8)	0(0.0)
	250~299만원(%)	0(0.0)	10(45.5)	9(40.9)	3(13.6)	0(0.0)
	300~349만원(%)	3(13.0)	7(30.4)	8(34.8)	4(17.4)	1(4.3)
	350~399만원(%)	2(15.4)	3(23.1)	6(46.2)	2(15.4)	0(0.0)
	400만 원 이상(%)	2(6.1)	13(39.4)	14(42.4)	4(12.1)	0(0.0)
연령 (n=137)	30대(%)	0(0.0)	1(25.0)	2(50.0)	1(25.0)	0(0.0)
	40대(%)	2(4.9)	15(36.6)	16(39.0)	7(17.1)	1(2.4)
	50대(%)	4(6.9)	25(43.1)	24(41.4)	5(8.6)	0(0.0)
	60대(%)	6(22.2)	8(29.6)	8(29.6)	4(14.8)	1(3.7)
	70대 이상(%)	1(14.3)	2(28.6)	2(28.6)	2(28.6)	0(0.0)
출신 지역 (n=132)	광주(%)	0(0.0)	10(50.0)	5(25.0)	4(20.0)	1(5.0)
	전북(%)	3(7.1)	18(42.9)	17(40.5)	4(9.5)	0(0.0)
	전남(%)	7(11.7)	17(28.3)	26(43.3)	9(15.0)	0(0.0)
	제주(%)	1(12.5)	4(50.0)	3(37.5)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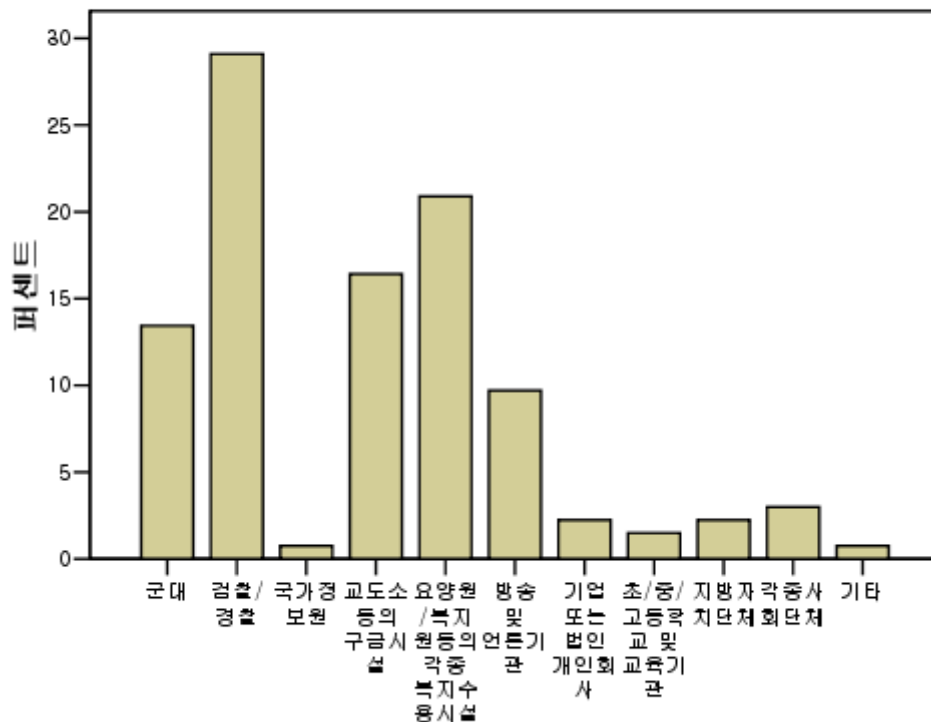
### 3.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기관

- 지역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중복응답의 결과는 <표 2-3>, <표 2-4>, <표 2-5>, <표 2-6>와 같다.
- 광주·전남·북·제주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 1순위에서는 검찰·경찰 39명(29.1%) 요양원·복지원 등 각종 복지수용시설 28명 (20.9%),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22명(16.4%), 군대 18명(13.4%)순이다. 이를, 국가 통제를 받는 대표적인 기관인 군대, 검찰·경찰, 국가정보원,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을 합산하면 59.6%(80명)이다.
- 이를 성별, 수입, 연령, 지역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 의원의 경우, 검찰·경찰(29.7%), 복지원 등 각종 복지수용시설(21.6%), 구금시설(18.9%), 군대(10%)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의원의 경우, 군대(31.6%), 검찰·경찰(26.3%), 복지원 등 각종 복지수용시설(21.1%)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남성의원들과 여성의원 사이에 ‘지역사회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장소’로 군대라는 응답이 21.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의 경우 의무복무를 통해 군대의 내부사정과 문화를 이해한 반면, 여성들의 경우 군대문화에 대해 직접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사회 저변에 작동되고 있는 군대문화가 부정적인 이미지이고 실제로 위계적, 권위적, 상부하달식의 명령체계의 군대문화 이미지가 우리사회에서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수입에서는, 100~149만원 검찰·경찰(66.7%), 군대(33.3%), 150~199만원 언론기관(42.9%), 구금시설(28.6%), 검찰·경찰(14.3%), 복지원 등 각종 수용시설(14.1%), 200~249만원, 검찰·경찰(35.7%), 복지원 등 각종 수용시설(25.0%), 구금시설(17.9%), 250~299만원 검찰·경찰(22.7%), 구금시설(22.7%), 복지원 등 각종 수용시설(17.4%), 군대(13.6%), 300~349만원 검찰·경찰(34.8%), 군대(26.1%), 복지원 등 각종 수용시설(23.1%), 구금시설(15.4%), 400만원 이상 복지원 등 각종 수용시설(28.1%), 검찰·경찰(21.9%), 구금시설(15.6%), 군대(12.5%) 등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에서는, 30대는 복지원 등 각종수용시설(50%), 구금시설(25%), 기업체 및 회사(25%)이며, 40대는 복지원 등 각종 수용시설(31.6%), 검찰·경찰(21.1%), 구금시설(18.4%), 군대(13.2%)이며, 50대는 검찰·경찰(30.5%), 구금시설(20.3%), 복지원 등 각

중 수용시설(18.6%), 군대(10.2%), 언론기관(10.2%)이며, 60대는 검찰·경찰(44.4%), 군대(18.5%), 언론기관(18.5%)이며, 70대는 군대(33.3%), 검찰·경찰(16.7%), 언론기관(16.7%)로 나타났다. 30~40대에서는 복지원 등 각종 복지 수용시설이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한 장소라고 응답한 반면, 50~70대는 검찰·경찰, 구금시설, 군대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지역에서는 복지원 등 각종 수용시설(40%), 구금시설(30%), 검찰·경찰(15%)이며, 전북지역은 검찰·경찰(42.5%), 구금시설(17.5), 복지원 등 각종 수용시설(12.5%)이며, 전남지역은 검찰·경찰(23.7%), 복지원 등 각종 수용시설(23.7%), 언론기관(15.3%), 군대(13.6%)이며, 제주지역은, 검찰·경찰(25%), 구금시설(25%), 복지원 등 각종수용시설(12.5%), 언론기관(12.5%)이다.

인권차별심한곳



<표2-3>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나는 곳-성별, 소득 (1순위)

(단위: 명, %)

구분	전체 (%)	성별(n=130)		소득(n=129)						
		남	여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349만원	350~399만원	400만원 이상
경찰·경찰	39 (29.1)	33 (29.7)	5 (26.3)	2 (66.7)	1 (14.3)	10 (35.7)	5 (22.7)	8 (34.8)	5 (35.8)	7 (21.9)
각종복지 수용시설	28 (20.9)	24 (21.6)	4 (21.1)	0 (0.0)	1 (14.3)	7 (25.0)	3 (13.6)	4 (17.4)	3 (23.1)	9 (28.1)
구급시설	22 (16.4)	21 (18.9)	1 (5.3)	0 (0.0)	2 (28.6)	5 (17.9)	5 (22.7)	3 (13.0)	2 (15.4)	5 (15.6)
군대	18 (13.4)	10 (9.0)	6 (31.6)	1 (33.3)	0 (0.0)	1 (3.6)	3 (13.6)	6 (26.1)	0 (0.0)	4 (12.5)
언론기관	13 (9.7)	11 (9.9)	1 (5.3)	0 (0.0)	3 (42.9)	2 (7.1)	1 (4.5)	1 (4.3)	2 (15.4)	3 (9.4)
각종 사회단체	4 (3.0)	3 (2.7)	1 (5.3)	0 (0.0)	0 (0.0)	1 (3.6)	1 (4.5)	1 (4.3)	0 (0.0)	1 (3.1)
기업 법인회사	3 (2.2)	2 (1.8)	1 (5.3)	0 (0.0)	0 (0.0)	0 (0.0)	1 (4.5)	0 (0.0)	1 (7.7)	1 (3.1)
지방자치단체	3(2.2)	3 (2.7)	0 (0.0)	0 (0.0)	0 (0.0)	1 (3.6)	1 (4.5)	0 (0.0)	0 (0.0)	1 (3.1)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2 (1.5)	2 (1.8)	0 (0.0)	0 (0.0)	0 (0.0)	0 (0.0)	2 (9.1)	0 (0.0)	0 (0.0)	0 (0.0)
국가정보원	1 (0.7)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1)

<표2-4>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나는 곳-연령, 출신지역(1순위)

(단위: 명, %)

구분	연령(n=133)					출신지역(n=129)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검찰·경찰	0 (0.0)	8 (21.1)	18 (30.5)	12 (44.4)	1 (16.7)	3 (15.0)	17 (42.5)	14 (23.7)	2 (25.0)
복지수용시설	2 (50.0)	12 (31.6)	11 (18.6)	1 (3.7)	2 (33.)	8 (40.0)	5 (12.5)	14 (23.7)	1 (12.5)
구급시설	1 (25.0)	7 (18.4)	12 (20.3)	2 (7.4)	0 (0.0)	6 (30.0)	7 (17.5)	7 (11.9)	2 (25.0)
군대	0 (0.0)	5 (13.2)	6 (10.2)	5 (18.5)	2 (33.3)	1 (5.0)	4 (10.0)	8 (13.6)	2 (25.0)
언론기관	0 (0.0)	1 (2.6)	6 (10.2)	5 (18.5)	1 (16.7)	0 (0.0)	2 (5.0)	9 (15.3)	1 (12.5)
사회단체	0 (0.0)	2 (5.3)	2 (3.4)	0 (0.0)	0 (0.0)	1 (5.0)	1 (2.5)	2 (3.4)	0 (0.0)
기업 법인회사	1 (25.0)	0 (0.0)	2 (3.4)	0 (0.0)	0 (0.0)	1 (5.0)	0 (0.0)	2 (3.4)	0 (0.0)
지방자치단체	0 (0.0)	2 (5.3)	1 (1.7)	0 (0.0)	0 (0.0)	0 (0.0)	2 (5.0)	1 (1.7)	0 (0.0)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0 (0.0)	1 (2.6)	1 (1.7)	0 (0.0)	0 (0.0)	0 (0.0)	1 (2.5)	1 (1.7)	0 (0.0)
국가정보원	0 (0.0)	0 (0.0)	0 (0.0)	1 (3.7)	0 (0.0)	0 (0.0)	1 (2.5)	0 (0.0)	0 (0.0)

- 2순위에서는,

- 광주·전남·북·제주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 2순위에서는 요양원·복지원 등의 각종 사회복지생활시설 27명(21.3%), 검찰·경찰 25명(19.7%), 교도소 등의 구급시설 22명(17.3%)순이다. 2순위에서도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검찰·경찰, 교도소 등의 구급시설, 국가정보원 등을 합산하면 36.2%(46명)로 인권침해나 차별이 빈번한 장소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응답결과를 토대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기관(검찰, 군대, 경찰, 교도소 등의 구급시설)에서의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

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의 폐쇄적이고 공개를 꺼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군, 경찰, 교도소의 구금시설은 자신들은 지방행정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주요한 활동과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은 비업무영역이라는 인식과 폐쇄성으로 인해 불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시설들을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방안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2-5>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나는 곳-성별, 소득 (2순위)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n=130)		소득(n=129)						
		남	여	100~ 149 만원	150~ 199 만원	200~ 249 만원	250~ 299 만원	300~ 349 만원	350~ 399 만원	400 만원 이상
검찰·경찰	25 (20.2)	22 (21.2)	3 (15.8)	0 (0.0)	2 (33.3)	4 (14.8)	9 (50.0)	5 (21.7)	2 (15.4)	3 (9.7)
각종복지 수용시설	26 (21.0)	23 (22.1)	3 (15.8)	0 (0.0)	2 (33.3)	6 (22.2)	3 (16.7)	4 (17.4)	3 (23.1)	8 (25.8)
구금시설	20 (16.1)	15 (14.4)	5 (26.3)	1 (33.3)	0 (0.0)	5 (18.5)	1 (5.6)	3 (13.0)	2 (15.4)	7 (22.6)
군대	15 (12.1)	15 (14.4)	0 (0.0)	1 (33.3)	0 (0.0)	4 (14.8)	2 (11.1)	3 (13.0)	4 (30.8)	1 (3.2)
언론기관	11 (8.9)	8 (7.7)	2 (10.5)	0 (0.0)	1 (16.7)	2 (7.4)	1 (5.6)	3 (13.0)	0 (0.0)	3 (9.7)
각종 사회단체	3 (2.4)	3 (2.9)	0 (0.0)	0 (0.0)	1 (16.7)	2 (7.4)	0 (0.0)	0 (0.0)	0 (0.0)	0 (0.0)
기업 법인회사	6 (4.8)	5 (4.8)	1 (5.3)	0 (0.0)	0 (0.0)	0 (0.0)	1 (5.6)	2 (8.7)	1 (7.7)	2 (6.5)
지방자치단체	5 (4.0)	4 (3.8)	1 (5.3)	1 (33.3)	0 (0.0)	2 (7.4)	0 (0.0)	0 (0.0)	0 (0.0)	2 (6.5)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7 (5.6)	4 (3.8)	3 (15.8)	0 (0.0)	0 (0.0)	1 (3.7)	0 (0.0)	2 (8.7)	1 (7.7)	2 (6.5)
국가정보원	6 (4.8)	5 (4.8)	1 (5.3)	0 (0.0)	0 (0.0)	1 (3.7)	1 (5.6)	1 (4.3)	0 (0.0)	3 (9.7)

<표2-6>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나는 곳-연령, 출신지역(2순위)

(단위: 명, %)

구분	연령(n=133)					출신지역(n=129)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검찰·경찰	1 (25.0)	6 (16.2)	13 (23.6)	5 (20.0)	0 (0.0)	2 (10.0)	9 (23.1)	14 (26.4)	0 (0.0)
각종복지 수용시설	1 (25.0)	6 (16.2)	15 (27.3)	4 (16.0)	1 (16.7)	7 (35.0)	8 (20.5)	10 (18.9)	1 (12.5)
구급시설	0 (0.0)	6 (16.2)	10 (18.2)	3 (12.0)	3 (50.0)	5 (25.0)	4 (10.3)	8 (15.1)	2 (25.0)
군대	0 (0.0)	5 (13.5)	8 (14.5)	2 (8.0)	0 (0.0)	1 (5.0)	5 (12.8)	6 (11.3)	3 (37.5)
언론기관	0 (0.0)	3 (8.1)	4 (7.3)	3 (12.0)	1 (16.7)	0 (0.0)	7 (17.9)	1 (1.9)	1 (12.5)
각종 사회단체	0 (0.0)	0 (0.0)	2 (3.6)	1 (4.0)	0 (0.0)	1 (5.0)	0 (0.0)	2 (3.8)	0 (0.0)
기업 법인회사	1 (25.0)	2 (5.4)	1 (1.8)	1 (4.0)	1 (16.7)	1 (5.0)	2 (5.1)	3 (5.7)	0 (0.0)
지방자치단체	0 (0.0)	2 (5.4)	2 (3.6)	1 (4.0)	0 (0.0)	0 (0.0)	0 (0.0)	5 (9.4)	0 (0.0)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1 (25.0)	5 (13.5)	0 (0.0)	1 (4.0)	0 (0.0)	3 (15.0)	3 (7.7)	1 (1.9)	0 (0.0)
국가정보원	0 (0.0)	2 (5.4)	0 (0.0)	4 (16.0)	0 (0.0)	0 (0.0)	1 (2.6)	3 (5.7)	1 (12.5)

#### 4. 지역사회에서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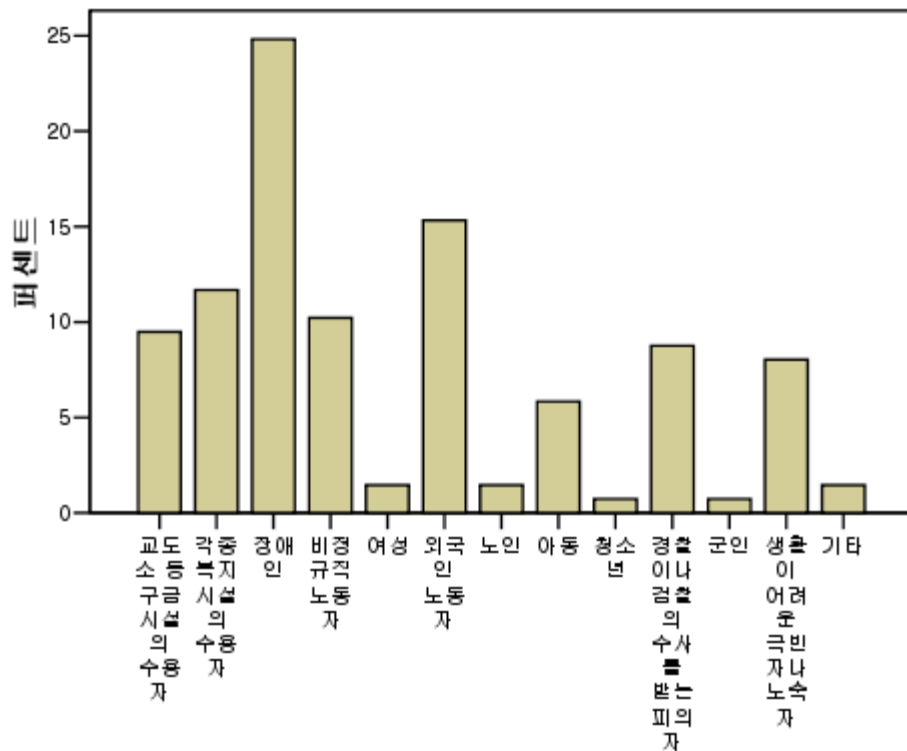
- 우리지역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권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중복응답의 결과는 <표 2-7>, <표 2-8>과 같다.
-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1순위는 장애인 34명(24.8%), 외국인 노동자 21명(15.3%), 각종복지 시설 수용자 16명(11.7%), 비정규직 노동자 14명(10.2%), 교도소 등의 구급시설 수용자 13명(9.5%),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12명(8.8%),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8명(8.0%)순으로 나타남.
- 2순위에서는, 각종 복지시설 수용자 27명(19.9%),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27



명(19.1) 외국인 노동자 17명(12.5%), 비정규직 노동자 11명(8.1), 노인 11명(8.1)순으로 나타남.

- 1, 2순위를 종합하면, 장애인, 각종 복지시설 수용자,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의 노동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입장은 관심은 많으나 이들이 인권보호가 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절실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노동시장 유연성”이 가져온 결과로써 급격히 증가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적극적 수용과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및 노인 그리고 청소년 등의 인권문제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권보호가 시급한 곳



<표 2-7>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 (1순위)

(단위: 명, %)

구 분	빈도(%)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수용자	13(9.5)
각종 복지시설 수용자	16(11.7)
장애인	34(24.8)
비정규직 노동자	14(10.2)
여 성	2(1.5)
외국인 노동자	21(15.3)
노 인	2(1.5)
아 동	8(5.8)
청소년	1(0.7)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12(8.8)
군 인	1(0.7)
동성애자	-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11(8.0)
기 타	2(1.5)
합 계	137(100.0)

<표2-8>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 (2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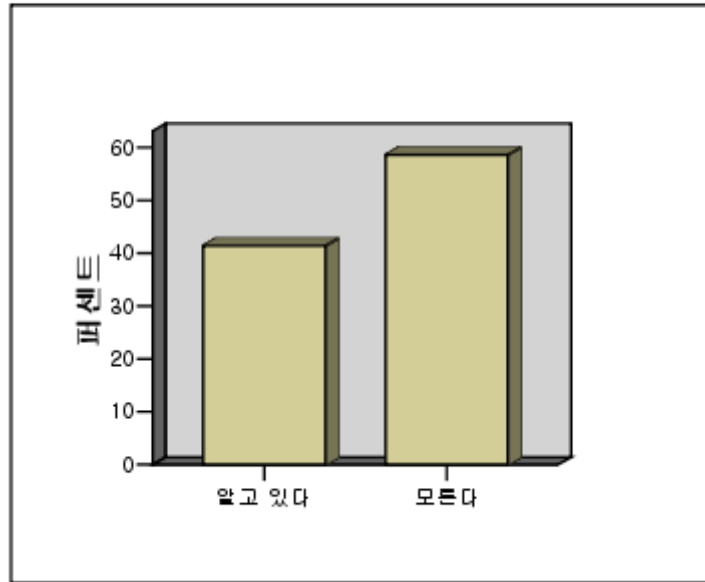
구 분	빈도(%)
교도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	5(3.7)
각종 복지시설 수용자	27(19.9)
장애인	9(6.6)
비정규직 노동자	11(8.1)
여 성	7(5.1)
외국인 노동자	17(12.5)
노 인	11(8.1)
아 동	10(7.4)
청소년	2(1.4)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8(5.7)
군 인	2(1.4)
동성애자	-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27(19.1)
기 타	-
합 계	136(100.0)

## 5.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

### 1)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의 인지여부

-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9>, <표 2-10>과 같다.
- 지방의원들의 경우, '알고 있다' 53명(41.4%), '모른다' 75명(58.6%)로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을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17.2%(22명)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서는, 남성의원들(41.4%) 여성의원(50%) '알고 있다'로 응답하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원들이 9.6%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장소를 알고 있었다.
- 소득에서는, 100~149만원(66.7%), 350~400만원(66.7%)이며, 300~349만원(38.1%), 250~299만원(33.3%) '알고 있다'로 응답한 반면, 소득 200만원대 의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을 모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연령대에서는, 30대(75.1%), 40대(47.4%), 50대(37.7%), 60대(37%), 70대 이상(33.3%)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대의 의원일수록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장소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52.6%), 전남(43.3%), 제주(42.9%), 전북(34.3%)로 나타난 반면, 전북지역 의원들의 경우 '모른다'(65.7%)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의원들이 인권문제가 발생 장소를 잘 알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인화학교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인권문제발생지역



<표2-9>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 인지여부 (단위: 명,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53(41.4)	45(32.8)
성별 (n=124)	남(%)	44(41.5)	62(58.5)
	여(%)	9(50.0)	9(50.0)
소득 (n=122)	100~149만원(%)	2(66.7)	1(33.3)
	150~199만원(%)	2(33.3)	4(66.7)
	200~249만원(%)	9(33.3)	18(66.7)
	250~299만원(%)	7(35.0)	13(65.0)
	300~349만원(%)	8(38.1)	13(61.9)
	350~399만원(%)	8(66.7)	4(33.3)
	400만 원 이상(%)	16(48.5)	17(51.5)
연령 (n=128)	30대(%)	3(75.1)	1(25.0)
	40대(%)	18(47.4)	20(52.6)
	50대(%)	20(37.7)	33(62.3)
	60대(%)	10(37.0)	17(63.0)
	70대 이상(%)	2(33.3)	4(66.7)
출신 지역 (n=121)	광주(%)	10(52.6)	9(47.4)
	전북(%)	12(34.3)	23(65.7)
	전남(%)	26(43.3)	34(56.7)
	제주(%)	3(42.9)	57.1(4)

-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대한 연속 질문을 개방형으로 응답하게 하여 재분류 정리한 결과는 <표 2-10>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원들의 경우, 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노사관계(25%), 경찰·검찰·군대(23%), 각종 복지시설의 수용자·요양원(21%),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17%)순이다.
- 의원들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53명 중 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 및 노사관계(25%)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이는, 최근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부상하기도 하였지만, 의원들이 가장 가까운 민원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반영이라 할 수 있다.
- 주목할 점은,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이라고 응답한 대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화학교를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표 2-10>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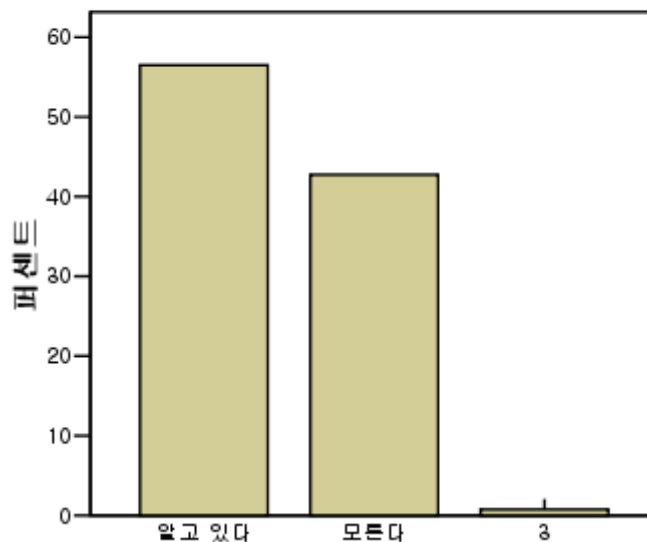
구 분	빈도(%)
경찰·검찰·군대	12(23)
각종 복지시설의 수용자·요양원	11(21)
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노사관계	13(25)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6(11)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9(17)
집회 및 시위현장	2(0.4)
기 타	-
<b>합 계</b>	<b>53(100.0)</b>

## 제2절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 1. 우리사회의 인권현안과 정책

- 최근 우리사회의 인권현안과 정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11>,<표2-12>와 같다.
- 지방의원들의 경우, '알고 있다' 74명(56.5%), '모른다' 56명(42.7%)로 나타났다.
- 이를 성별, 소득, 연령, 지역으로 나누어 교차분석 결과는, 남성 의원(57.8%), 여성의원(55.6%)가 '알고 있다'로 응답하였으며, 소득 수준에서는, 100~149만원(100%), 350~399만원(69.2%), 300~349(66.7%), 250~299(57.1%)로 300만원대의 소득수준의 의원들이 우리사회 인권현안과 정책에 대해서 가장 잘 인지하고 있었다. 연령에서는, 30대(75%), 40대(63.2%), 50대(50%), 60대(50%)로 연령이 낮을수록 우리사회의 인권현안과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에서는, 광주(70%), 제주(66.7%), 전북(61.1%)이다.
- 이를 종합하면, 여성의원 보다는 남성의원, 300만원대 소득, 30대인 의원들이 우리사회 인권현안과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논란이되는사항



<표 2-11> 논란 중인 인권현안

(단위 : 명,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74(56.5)	56(42.7)
성별 (n=127)	남(%)	63(57.8)	45(41.3)
	여(%)	10(55.6)	8(44.4)
소득 (n=125)	100~149만원(%)	3(100.0)	0
	150~199만원(%)	3(42.9)	4(57.1)
	200~249만원(%)	14(38.3)	15(51.7)
	250~299만원(%)	12(57.1)	9(42.9)
	300~349만원(%)	14(66.7)	7(33.3)
	350~399만원(%)	9(69.2)	4(30.8)
	400만 원 이상(%)	16(51.6)	14(45.2)
연령 (n=131)	30대(%)	3(75.0)	1(26.0)
	40대(%)	24(63.2)	14(36.8)
	50대(%)	30(54.5)	25(45.5)
	60대(%)	14(50.0)	13(46.4)
	70대 이상(%)	3(50.0)	3(50.0)
출신 지역 (n=124)	광주(%)	14(70.0)	6(30.0)
	전북(%)	22(61.1)	12(38.9)
	전남(%)	33(55.0)	27(45.0)
	제주(%)	2(66.7)	1(33.3)

-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우리사회의 인권현안과 정책 중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2-12>와 같다
- 우리사회의 인권현안과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지방의원 73명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된 사항(50.7%),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사항(19.2%), 차별금지법에 관한 사항(13.7%)로 나타났다.
- 비정규직 관련 사안이 50%를 선회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노동·고용정책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에 따르는 생활안정의 문제가 발생 할 때, 이에 대한 민원관계나 생활고 문제가 생활의 터전인 지역사회문제와 연결 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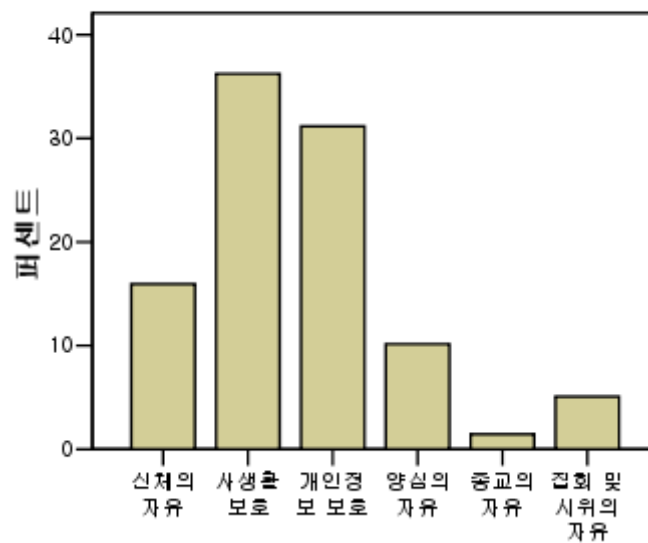
<표 2-12> 인지하고 있는 정책 현안 (단위: 명, %)

구 분	빈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사항	14(19.2)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사항	10(13.7)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된 사항	37(50.7)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	9(12.3)
기 타	3(4.1)
합 계	73(100.0)

## 2.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항

- 우리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13>과 같다.
- 지방의원들의 경우, 사생활보호 50명(35.5%), 개인정보 보호 43명(30.5%), 신체의 자유 22명(15.6%)로 나타났다. 사생활보호문제와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안으로 응답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의 무자비한 유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대응방식과 법적 제도적 정책수립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가장우선적보호할사항





<표 2-13>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안 (단위: 명, %)

구 분	빈도(%)
신체의 자유	22(15.6)
사생활 자유	50(35.5)
개인정보 보호	43(30.5)
양심의 자유	14(9.9)
종교의 자유	2(1.4)
집회 및 시위의 자유	7(5.0)
기 타	3(2.1)
<b>합 계</b>	<b>141(10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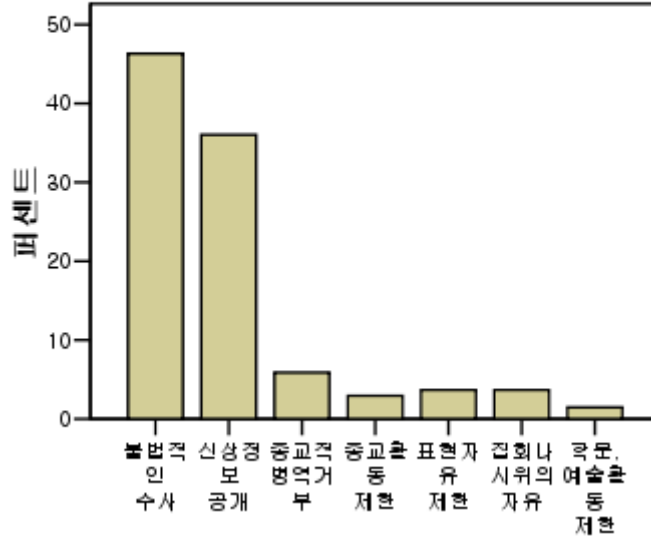
### 제3절 인권문제 유형에 대한 인식

#### 1.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인식

- 우리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유형에 대해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2-14>, <표 2-15>와 같다.
- 우리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응답결과, 1순위에서는, 검찰·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연행·구금·심문하는 문제(46.3%), 신문, 방송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문제(36%),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및 생각·행동할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5.9%), 공공기관, 언론, 인터넷, 서적 등에 개인의견 표현자유를 제한하는 문제(3.7%),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3.7%),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3.7%), 공공기관, 언론, 인터넷, 서적 등에 개인의견 표현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1.5%) 순으로 나타났다.
-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2순위 응답결과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신문·방송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문제(34.8%), 검찰·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연행·구금·심문하는 문제(20.0%), 공공기관, 언론, 인터넷, 서적 등에 개인의견 표현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15.6%),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8.9%),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및 생각·행동할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8.1%),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8.1%), 공공기관, 대학 등이 개인의 자유로운 학문, 예술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4.4%) 순으로 나타남.

**인권침해유형**



<표2-14> 인권침해의 유형 (1순위)

(단위: 명, %)

구 분	빈도(%)
검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연행, 구금, 심문하는 문제	63(46.3)
신문, 방송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문제	49(36.0)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및 생각,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	8(5.9)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4(2.9)
공공기관, 언론, 인터넷, 서적 등에 개인의견 표현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5(3.7)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5(3.7)
공공기관, 대학 등이 개인의 자유로운 학문, 예술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	2(1.5)
기타	-
<b>합 계</b>	<b>136(100)</b>

<표 2-15> 인권침해의 유형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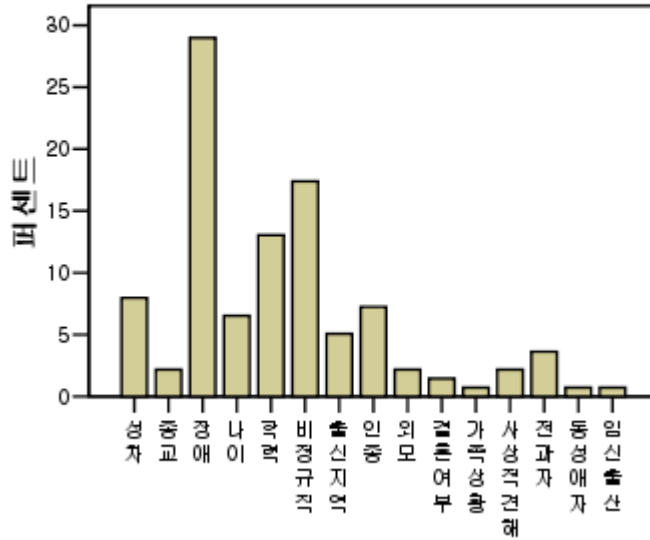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빈도(%)
검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연행·구금·심문하는 문제	27(20.0)
신문, 방송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문제	47(34.8)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및 생각,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	11(8.1)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12(8.9)
공공기관, 언론, 인터넷, 서적 등에 개인의견표현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21(15.6)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11(8.1)
공공기관, 대학 등이 개인의 자유로운 학문, 예술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	6(4.4)
기타	-
합 계	135(100.0)

## 2. 차별 유형에 대한 인식

-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유형에 대해 그 심각성을 순서대로 응답하게 한 중복응답 결과는 <표 2-16>, <표 2-17>와 같다.
- 지방의원의 경우 1순위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29.0%),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17.0%),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12.8%),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8.0%), 인종·피부색·출신국가나 민족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7.2%),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6.4%)순으로 나타났다.

### 차별심각성



<표 2-16> 지역사회 일어나는 차별 (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1(8.0)
종교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3(2.2)
장애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40(29.0)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9(6.5)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8(12.8)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24(17.0)
출신지역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7(5.1)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나 민족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0(7.2)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3(2.2)
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재혼, 사실혼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2(1.4)
한 부모가족(편부, 편모), 미혼모 가족 등 가족상황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0.7)
사상,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3(2.2)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5(3.6)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0.7)
과거,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임신, 출산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0.7)
기타	-
<b>합계</b>	<b>138(100.0)</b>

- 2순위에서는,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19.0%),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17.2%), 장애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15.3%), 출신지역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10.2%),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8.0%), 인종·피부색·출신국가나 민족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5.1%) 순으로 나타났다.
- 1, 2순위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장애차별,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대우, 학력·학벌차별, 성차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종·피부색·출신국가나 민족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최근 급증한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주여성들의 증가에 따른 차별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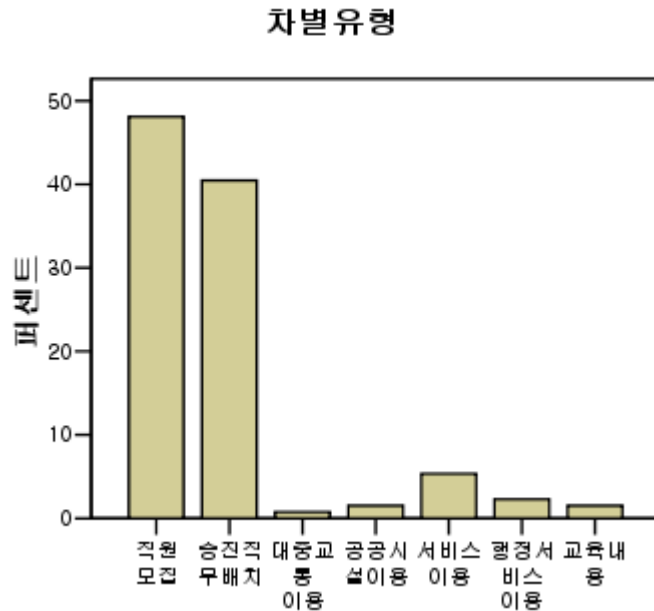
<표 2-17>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 (2순위)

(단위: 명, %)

구 분	빈도(%)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3(2.2)
종교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3(2.2)
장애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21(15.3)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1(8.0)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26(19.0)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24(17.5)
출신지역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4(10.2)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나 민족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7(5.1)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4(2.9)
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재혼, 사실혼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4(2.9)
한 부모가족(편부, 편모), 미혼모 가족 등 가족상황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4(2.9)
사상,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6(4.4)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7(5.1)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과거,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0.7)
임신, 출산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2(1.5)
기타	-
<b>합 계</b>	<b>137(100)</b>

### 3. 지역사회에서의 차별 유형

-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 유형을 1, 2순위로 중복 응답한 결과는 <표2-18>, <표 2-19>과 같다.
- 지방의회의원들의 경우,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48.1%),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40.5%),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별(5.3%),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2.3%)순으로 나타났다.



<표 2-18> 차별유형 (1순위) (단위: 명, %)

구 분	빈도(%)
직원의 모집, 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	63(48.1)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53(40.5)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	1(0.8)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이용과 관련한 차별	2(1.5)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	7(5.3)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	3(2.3)
상점, 음식점,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 이용과 관련된 차별	-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된 차별	2(1.5)
기타	-
<b>합 계</b>	<b>131(100.0)</b>

- 2순위에서는,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38.4%). 직원의 모집, 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26.4%),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14.4%),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5.6%),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된 차별(5.6%) 순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 의원들은 우리사회에서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물리적 기반이 취약하고, 일자리가 타 지역 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측면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청년실업의 증가, 비정규직문제의 심화에서 오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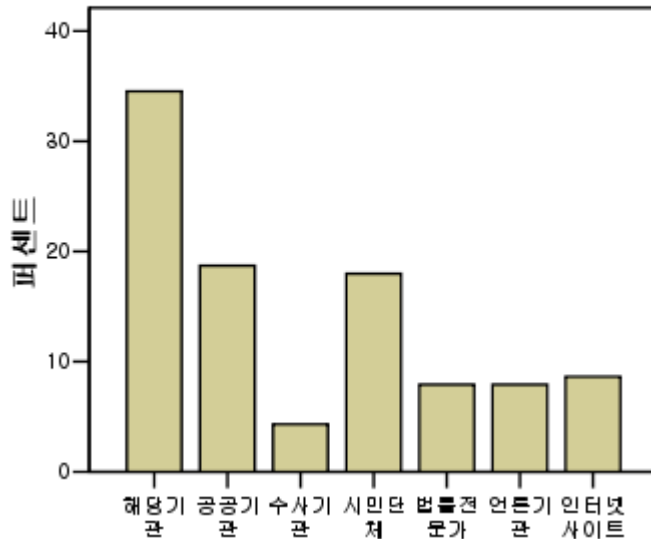
<표 2-19> 차별유형 (2순위) (단위: 명, %)

구 분	빈도(%)
직원의 모집, 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	33(26.4)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48(38.4)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	5(4.0)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이용과 관련한 차별	6(4.8)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	18(14.4)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	7(5.6)
상점, 음식점,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 이용과 관련된 차별	1(0.8)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된 차별	7(5.6)
기타	-
합 계	125(100.0)

#### 4.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

-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중복 응답한 결과는 <표 2-20>, <표 2-21>와 같다.
- 지방의회의원들의 경우,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한다.'(34.5%),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한다.'(18.7%),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18.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7.9%),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한다.'(7.9%)순이다.

### 차별의구제수단



<표 2-20> 구제수단 (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한다.	48(34.5)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한다.	26(18.7)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6(4.3)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25(18.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11(7.9)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한다.	11(7.9)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	12(8.6)
기타	-
<b>합 계</b>	<b>139(100.0)</b>

○ 2순위에서는,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27.0%),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한다(21.9%),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10.9%),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한다(10.2%),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한다(10.2%) 순으로 나타남.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시민 사회단체를 구제수단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나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함께하는 생활정치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온 결과의 반영이며, 그러한 활동에 대한 신뢰의 반영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 2-21> 구제수단 (2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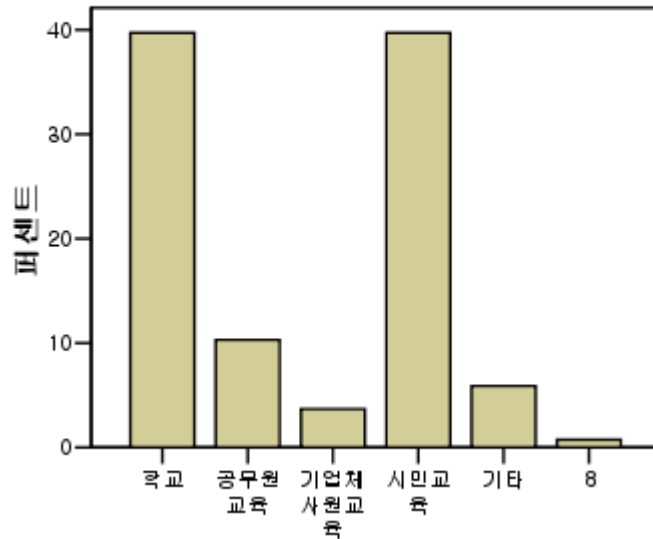
구 분	빈도(%)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한다.	14(10.2)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한다.	30(21.9)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14(10.2)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37(27.0)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13(9.5)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한다.	14(10.2)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	15(10.9)
기타	-
합 계	137(100)

## 제4절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 1. 인권교육에 대한 형식

-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떤 형식이 바람직한지의 결과는, <표 2-22>와 같음.
-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39.7%),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39.7%),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10.3%)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교육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의식과 시민의식은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교육과 학습을 통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시스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인권교육형식



<표 2-22> 인권교육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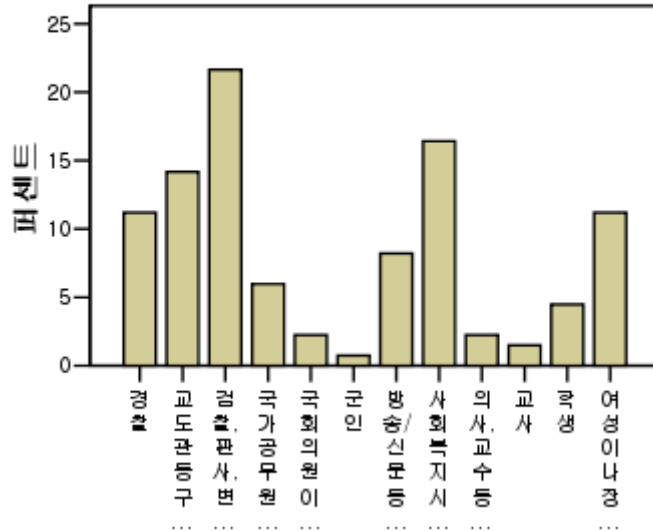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빈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	54(39.7)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14(10.3)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원교육	5(3.7)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	54(39.7)
기타	9(6.6)
합 계	136(100.0)

## 2.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

-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교육이 가장 필요한 집단을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2-23>, <표 2-24>와 같다.
-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1순위에서, 검찰·판사·변호사 등 사법관계자(21.6%),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종사자 (16.4%), 경찰(11.2%),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11.2%), 방송/신문 등 언론인(8.2%), 국가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 (6.0%)순으로 나타남.

**인권교육이 가장 필요한 집단**



<표2-23>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 (1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경찰	15(11.2)
교도관 등 구금 보호시설 공무원	19(14.2)
검찰, 판사, 변호사 등 사법관계자	29(21.6)
국가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	8(6.0)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3(2.2)
군인	1(0.7)
방송/신문 등 언론인	11(8.2)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종사자	22(16.4)
의사, 교수 등의 전문직 종사자	3(2.2)
교사	2(1.5)
학생	6(4.5)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15(11.2)
기타	-
<b>합 계</b>	<b>134(100.0)</b>

- 2순위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종사자(22.7%),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15.6%), 검찰·판사·변호사 등 사법관계자(12.5%), 교도관 등 구금·보호시설 공무원(11.7%), 경찰(8.6%) 순으로 나타남.
- 결과를 합산하면, 국가기구(경찰, 검찰, 구금시설, 공무원 조직, 군인, 의회 및 의원 등)에서 인권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집계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시

설, 정신의료시설과 같은 사회적 보호대상자들의 생활·수용시설의 관계자라 할 수 있다.

<표 2-24>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 (2순위)

(단위: 명, %)

구 분	빈도(%)
경찰	11(8.6)
교도관등 구금 보호시설 공무원	15(11.7)
검찰, 판사, 변호사 등 사법관계자	16(12.5)
국가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	10(7.8)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5(3.9)
군인	6(4.7)
방송·신문 등 언론인	8(6.3)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종사자	29(22.7)
의사, 교수 등의 전문직 종사자	-
교사	4(3.1)
학생	4(3.1)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20(15.6)
기타	-
<b>합 계</b>	<b>128(100.0)</b>

## 제5절 인권침해 관련 현안

### 1. 인권침해 현안에 대한 인식

- 인권침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문항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 한다 등의 5점 척도화 하였다. 이를 다시 재분류하여 '매우동의'와 '동의'는 '동의 한다'로 '중간이다'는 그대로 '중간 이다'로 '매우반대'와 '반대'는 '반대'로 하였다. 이를 점수화할 때는 5점을 그대로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침해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25>과 같다.
- 인권침해에 대한 인지정도의 평균과 평균편차는 전체 합산 점수 95점 만점에 (M)=42.8750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이다.

<표2-25> 인권침해 의식에 대한 평균비교

구분	n=140
평균(M)	42.8750
표준편차(SD)	5.8397

- 이를,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들과 교차분석하면 <표2-26>와 같다.
- 성별에서는, 남성의원의 인권침해 인지정도 평균(M)=44.5946)이며, 소득수준에서는 100~149만원(M=46.0000), 400만원 이상(M=44.0588)로 양극단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력은 중졸(M=49.6667), 연령, 60대(M=45.3333), 출신지역은 제주(M=45.625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를 종합하면, 제주지역에 사는 남성의원이면서 월 소득은 100만원이거나 400만원 이상, 학력은 중졸 이상인 60대가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26> 인구사회학적요인과 인권침해인지정도 (단위: 명, %)

구 분		평균(M)	표준편차(SD)
성 별 (n=133)	남	44.5946	5.56512
	여	40.0000	6.59545
	무응답	41.0000	-
	합 계	43.8421	5.9406
소득 (n=131)	100~149만원	46.0000	11.31371
	150~199만원	43.7500	5.99404
	200~249만원	43.4138	5.85246
	250~299만원	43.6190	5.70505
	300~349만원	43.7273	5.13792
	350~399만원	43.9231	7.57696
	400만원 이상	44.0588	6.40521
	합 계	43.8321	5.96935
학 력 (n=133)	중졸	49.6667	2.16025
	고등중퇴	36.0000	-
	고졸	44.6471	4.86852
	대학중퇴	40.5000	3.53553
	대졸	43.9219	6.29261
	대학원(석사)	42.0625	7.06606
	대학원(박사)	40.0000	1.00000
	합 계	43.8421	5.94016
연 령 (n=136)	30대	38.2500	2.75379
	40대	41.9000	7.38259
	50대	45.0345	4.62247
	60대	45.3333	5.41366
	70대 이상	43.1429	4.98092
	합 계	43.8750	5.89970
출 신 지 역 (n=132)	광 주	43.3000	6.14817
	전 북	44.2195	6.36597
	전 남	43.6167	5.72562
	제 주	45.6250	6.30051
	기타	43.0000	5.29150
	합 계	43.8636	5.95758

## 2. 인권침해 현안에 대한 인지정도

- 인권침해 현안에 대한 인지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재분류한 결과는 <표 2-27>과 같다. 지방의원들의 인권침해 현안에 대한 인지정도를 보면,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87.2%), 시위나 집회의 자유 보장(72.8%),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학생에게 의무화 하는 것은 옳지 않음(70.7%),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허용해야 함(66.4%),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8.5%), 경찰 불시검문 허용반대(75.1%),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48.6%),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48.6%),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11.6%) 순으로 나타남.
-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87.2%), 시위나 집회의 자유 보장(72.8%)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3번 문항에서 우리지역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곳을 국가 통제 기관인 군대+검찰+경찰+교도소 등의 구금기관이라고 응답한 결과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해결하고 국가통제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통제기관의 공개화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등의 방법 또한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의 될 수 있다.
-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지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면서, 월-소득 400만원 이상의 대졸자인 지방의원이 전체적으로 인권침해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종교재단 학교에서 종교의식 의무화는 옳지 않다'와 '종교적 신념에 대한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주의할 점은, 응답자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은 부분이 편중되는 변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별, 연령대, 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표 2-27> 인권침해관련 현안에 대한의식 (단위: 명, %)

인권침해 현안에 대한 의식	N	동의한다	중간이다	동의 하지 않음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140	93명 (66.4%)	24 (17.0%)	23 (16.5%)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0	82명 (58.5%)	26명 (18.6%)	32명 (22.8%)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학생에게 의무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140	99명 (70.7%)	23명 (16.4%)	18명 (12.8%)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시에 검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140	15명 (10.7%)	18명 (12.9%)	107명 (76.5%)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 할 수 있다	138	16명 (11.6%)	23명 (16.7%)	99명 (71.7%)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140	122명 (87.2%)	14명 (10.0%)	4명 (2.9%)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140	68명 (48.6%)	34명 (24.3%)	38명 (27.2%)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140	102명 (72.8%)	29명 (20.7%)	9명 (6.4%)

### 3. 인권침해 각 사안과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교차분석 결과

○ 인권침해 각 사안과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교차분석 결과는 <표2-28>, <표2-29>,<표 2-30>,<표2-31>,<표2-32>,<표2-33>,<표2-34>,<표2-35>와 같다.

#### 1)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인 인권 보장

○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동의한다는 응답결과는 <표2-28>와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동의 한다' 남성(73%), 여성(90%)로 여성이 남성보다 17% 높게 나타났다.



-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40명 50대(42.1%), 40대(30%), 60대(20%)로 50대가 가장 높고 3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소득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400만원 이상(25.2%), 200~249만원(21.5%), 300~349만원(17.8%)로 100만원 대는 전체의 8.1%, 200만원대 37.8%, 300만원 대 27.4%, 400만원 이상 26.7%로 200만원 대가 가장 높고 100만원 대가 가장 낮았다. 하지만 소득이 200만원 이상 전체의 90.4%로 나타났다.
- 학력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중 대졸(48.9%), 고졸(26.3%), 대학원 석사(11.7%)로 대졸과 고졸이 전체 75.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인권 감수성이라 할 수 있는 인권의식 함양의 방법은 학교 교육을 통한 제도화가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 출신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136명 중 전남(45.6%), 전북(31.6%), 광주(14.7%), 제주(5.9)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지 응답 율과 의원수가 각 지역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광역과 기초단체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을 구분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곳은 전남지역이다.

<표 2-28>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대한 의식 (단위: 명, %)

구 분		의식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115(83.9)	22(16.1)	78(56.9)	12(8.8)	3(2.2)	-
	여	21(15.3)	5(3.6)	14(10.2)	1(0.7)	1(0.7)	-
	기타	1(0.7)	-	1(0.7)	-	-	-
	합 계	137(100)	27(19.7)	93(67.9)	13(9.5)	4(2.9)	-
연 령	30대	4(2.9)	1(0.7)	3(2.1)	-	-	-
	40대	42(30)	14(10)	23(16.4)	3(2.1)	2(1.4)	-
	50대	59(42.1)	8(5.7)	42(30.)	8(5.7)	1(0.7)	-
	60대	28(20.0)	3(2.1)	22(15.7)	2(1.4)	1(0.7)	-
	70대 이상	7(5.0)	1(0.7)	5(3.6)	1(0.7)	-	-
	합 계	140(100)	27(19.3)	95(67.9)	14(10)	4(2.9)	-
소 득	100~149만원	3(2.2)	1(0.7)	2(1.5)	-	-	-
	150~199만원	8(5.9)	-	7(5.2)	-	1	-
	200~249만원	29(21.5)	9(6.7)	17(12.6)	3(2.2)	-	-
	250~299만원	22(16.3)	4(3.0)	16(11.9)	2(1.5)	-	-
	300~349만원	24(17.8)	4(3.0)	17(12.6)	2(1.5)	1(0.7)	-

	350~399만원	13(9.6)	3(2.2)	7(5.2)	3(2.2)	-	-
	400만원 이상	34(25.2)	6(4.4)	24(17.8)	2(1.5)	2(1.5)	-
	기 타	2(1.5)	-	1(0.7)	1(0.7)	-	-
	합 계	135(100)	27(20)	91(67.4)	13(9.6)	4(3.0)	-
학 력	중졸	6(4.4)	1(0.7)	5(3.6)	-	-	-
	고등중퇴	1(0.7)	-	1	-	-	-
	고졸	36(26.3)	7(5.1)	24(17.5)	5(3.6)	-	-
	대학중퇴	2(1.5)	1(0.7)	1(0.7)	-	-	-
	대졸	67(48.9)	13(9.5)	47(34.3)	4(2.9)	3(2.2)	-
	대학원(석사)	16(11.7)	3(2.2)	12(8.8)	1(0.7)	-	-
	대학원(박사)	3(2.2)	-	2(1.5)	1(0.7)	-	-
	기타	6(4.4)	2(1.5)	1(0.7)	2(1.5)	1(0.7)	-
	합 계	137(100)	27(19.7)	93(67.9)	13(9.5)	4(2.9)	-
출신 지역	광주	20(14.7)	6(4.4)	13(9.6)	1(0.7)	-	-
	전북	43(31.6)	8(5.9)	29(21.3)	5(3.7)	1(0.7)	-
	전남	62(45.6)	11(8.1)	43(31.6)	6(4.4)	2(1.5)	-
	제주	8(5.9)	1(0.7)	5(3.7)	1(0.7)	1(0.7)	-
	기타	3(2.2)	1(0.7)	2(1.5)	-	-	-
	합계	136(100)	27(19.9)	92(67.6)	13(9.6)	4(2.9)	-

## 2) 경찰의 불신검문에 대한 허용

-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시에 검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29>과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반대 한다’ 남성(64.9%), 여성(71%)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40명 50대(32.1%), 40대(22.1%), 60대(15%)순으로 50대가 가장 높았으며, 전체 응답자 중 40~50대가 50%이상이다.
- 학력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중 대졸(48.9%), 고졸(26.3%), 대학원 석사(11.7%)로 대졸과 고졸이 전체 75.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인권 감수성”이라 할 수 있는 인권의식 함양의 방법은 학교 교육을 통한 제도화가 가장 효과적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소득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400만원 이상(18.5%), 200~249만원(14.8%), 300~349만원(13.4%)로 300~399(8.9%), 100만원 대(9.6%)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136명 중 전남(33.9%), 전북(23.3%), 광주(12.5%), 제주(3.7)로 나타났다.

<표 2-29> 경찰 불신검문에 대한 허용정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 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115(83.9)	1(0.7)	11(8.0)	14(10.2)	55(40.1)	34(24.8)
	여	21(15.3)	1(0.7)	2(1.5)	3(2.2)	9(6.6)	6(4.4)
	기타	1(0.7)	-	1(0.7)	-	-	-
	합 계	137(100)	2(1.5)	13(9.5)	18(13.1)	64(46.7)	40(29.2)
연 령	30대	4(2.9)	-	-	-	1(0.7)	3(2.4)
	40대	42(30.0)	-	3(2.1)	8(5.7)	16(11.4)	15(10.7)
	50대	59(42.1)	-	6(4.3)	8(5.7)	28(20.0)	17(12.1)
	60대	28(20.0)	2(1.4)	4(2.9)	1(0.7)	17(12.1)	4(2.9)
	70대 이상	7(5.0)	-	-	1(0.7)	5(3.6)	1(0.7)
	합 계	140(100)	2(1.4)	13(9.3)	18(12.9)	67(47.9)	40(28.6)
학 력	중졸	6(4.4)	-	1(0.7)	-	3(2.2)	2(1.5)
	고등중퇴	1(0.7)	-	1(0.7)	-	-	-
	고졸	36(26.3)	2(1.5)	2(1.5)	5(3.6)	19(13.9)	8(5.8)
	대학중퇴	2(1.5)	-	-	-	1(0.7)	1(0.7)
	대졸	67(48.9)	-	6(4.4)	9(6.6)	31(22.6)	21(15.3)
	대학원(석사)	16(11.7)	-	2(1.5)	1(0.7)	6(4.4)	7(5.1)
	대학원(박사)	3(2.2)	-	1(0.7)	-	2(1.5)	-
	기타	6(4.4)	-	-	3(2.2)	1(0.7)	-
합 계	137(100)	2(1.5)	13(9.5)	18(13.1)	64(46.7)	40(29.2)	
소 득	100~149만원	3(2.2)	-	1(0.7)	-	2(1.5)	-
	150~199만원	8(5.9)	2(1.5)	1(0.7)	-	3(2.2)	8(5.9)
	200~249만원	29(21.5)	-	3(2.2)	6(4.4)	7(5.2)	13(9.6)
	250~299만원	22(16.3)	-	2(1.5)	1(0.7)	10(7.4)	9(6.7)
	300~349만원	24(17.8)	-	1(0.7)	5(3.7)	14(10.4)	4(3.0)
	350~399만원	13(9.6)	-	1(0.7)	-	7(5.2)	5(3.7)
	400만원이상	34(25.2)	-	4(3.0)	5(3.7)	18(13.3)	7(5.2)
	기 타	2(1.5)	-	-	-	2(1.5)	-
	합 계	135(100)	2(1.5)	13(9.6)	17(12.6)	63(46.7)	40(29.6)
출신 지역	광주	20(14.7)	-	-	3(2.2)	7(5.1)	10(7.4)
	전북	43(31.6)	1(0.7)	5(3.7)	4(2.9)	18(13.2)	15(11.0)
	전남	62(45.6)	1(0.7)	7(5.1)	8(5.9)	33(24.3)	13(9.6)
	제주	8(5.9)	-	1(0.7)	2(1.5)	3(2.2)	2(1.5)
	기타	3(2.2)	-	-	-	3(2.2)	-
	합계	136(100)	2(1.5)	13(9.6)	17(12.5)	64(47.1)	40(29.4)

### 3) 종교재단 학교에서 종교의식 의무화는 옳지 않다

- 종교재단 학교에서 종교의식을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응답결과는 <표2-30>와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반대 한다' 남성(60.6%), 여성(70%)로 여성이 남성보다 10.6%로 높게 나타났다. 남녀 공히, 60% 이상 높게 나타난 원인은 의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학교교육과 교육 분위기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40명 40대(13%), 50대(5%), 60대(2.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중 대졸(35%), 고졸(17.5%), 대학원 석사(10%) 순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는 기강확립임을 알 수 있다.
- 소득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400만원 이상(16%), 200~249만원(15.6%), 250~300(11.9%), 300~349원(11.9%), 350~399(8.8%)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136명 중 전남(30.9%), 전북(22%), 광주(13.2%), 제주(4.4%)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0> 종교재단 학교에서 종교의식 의무화 허용정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115(83.9)	30(21.9)	53(38.7)	18(13.1)	14(10.2)	-
	여	21(15.3)	4(2.9)	10(7.3)	4(2.9)	1(0.7)	2(1.5)
	기타	1(0.7)	1(0.7)	-	-	-	-
	합 계	137(100)	35(25.5)	63(46.0)	22(16.1)	15(10.9)	2(1.5)
연 령	30대	35(25.0)	2(1.4)	16(11.4)	14(10.0)	2(1.4)	1(0.7)
	40대	64(45.7)	2(1.4)	15(10.7)	26(18.6)	18(12.9)	3(2.1)
	50대	23(16.4)	-	8(5.7)	8(5.7)	6(4.3)	1(0.7)
	60대	16(11.4)	-	2(1.4)	10(7.1)	2(1.4)	2(1.4)
	70대 이상	2(1.4)	-	1(0.7)	1(0.7)	-	-
	합 계	140(100)	4(2.9)	42(30.0)	59(42.1)	28(20.0)	7(5.0)
- 력	중졸	6(4.4)	4(2.9)	-	2(1.5)	-	-
	고등중퇴	1(0.7)	-	1(0.7)	-	-	-
	고졸	36(26.3)	6(4.4)	18(13.1)	6(4.4)	4(2.9)	2(1.5)
	대학중퇴	2(1.5)	1(0.7)	1(0.7)	-	-	-
	대졸	67(48.9)	21(15.3)	27(19.7)	11(8.0)	8(5.8)	-
	대학원(석사)	16(11.7)	4(2.9)	10(7.3)	1(0.7)	1(0.7)	-
	대학원(박사)	3(2.2)	-	1(0.7)	2(1.5)	-	-
	기타	3(2.2)	1(0.7)	2(1.5)	-	-	-
합 계	137(100)	35(25.5)	63(46.0)	22(16.1)	15(10.9)	2(1.5)	
소 득	100~149만원	3(2.2)	1(0.7)	1(0.7)	1(0.7)	-	-
	150~199만원	8(5.9)	1(0.7)	6(4.4)	1(0.7)	-	-
	200~249만원	29(21.5)	9(6.7)	12(8.9)	6(4.4)	1(0.7)	1(0.7)
	250~299만원	22(16.3)	7(5.2)	9(6.7)	2(1.5)	4(3.0)	-
	300~349만원	24(17.8)	3(2.2)	13(9.6)	4(3.0)	4(3.0)	-
	350~399만원	13(9.6)	6(4.4)	6(4.4)	1(0.7)	-	-
	400만원이상	34(25.2)	8(5.9)	15(11.1)	6(4.4)	4(3.0)	1(0.7)
	기 타	2(1.5)	-	-	1(0.7)	1(0.7)	-
	합 계	135(100)	34(25.2)	62(45.9)	22(16.3)	15(11.1)	2(1.5)
출신 지역	광주	20(14.7)	7(5.1)	11(8.1)	2(1.5)	-	-
	전북	43(31.6)	12(8.8)	18(13.2)	6(4.4)	7(5.1)	-
	전남	62(45.6)	14(10.3)	28(20.6)	11(8.1)	7(5.1)	2(1.5)
	제주	8(5.9)	1(0.7)	5(3.7)	1(0.7)	1(0.7)	-
	기타	3(2.2)	-	1(0.7)	2(1.5)	-	-
	합계	136(100)	34(25.0)	63(46.3)	22(16.2)	15(11.0)	2(1.5)

#### 4)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31>와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동의 한다' 남성(61.3%), 여성(70%)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녀 공히, 6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어떤 사항을 요구하거나 항의할 때는 시위나 집회가 일반적인 행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40명 중 50대(30%), 40대(24.3%), 60대(11.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대졸(38%), 고졸(16.1%), 대학원 석사(9.5%) 순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 소득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400만원 이상(18.5%), 250~300(14.8%), 200~249만원(14.8%), 300~349원(13.1%), 350~399(6%)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136명 중 전남(31.6%), 전북(25%), 광주(10.3%), 제주(3.5%)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시위나 집회의 자유정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 한다	중간이다	반대 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115(83.9)	17(12.4)	67(48.9)	24(17.5)	7(5.1)	-
	여	21(15.3)	7(5.1)	8(5.8)	4(2.9)	2(1.5)	-
	기타	1(0.7)	-	-	1(0.7)	-	-
	합 계	137(100)	24(17.5)	75(54.7)	29(21.2)	9(6.6)	-
연 령	30대	4(2.9)	2((1.4)	2(1.4)	-	-	-
	40대	42(30.0)	13(9.3)	21(15.0)	5(3.6)	3(2.1)	-
	50대	59(42.1)	7(5.0)	35(25.0)	14(10.0)	3(2.1)	-
	60대	28(20.0)	2(1.4)	15(10.7)	8(5.7)	3(2.1)	-
	70대 이상	7(5.0)	-	5(3.6)	2(1.4)	-	-
	합 계	140(100)	24(17.1)	78(55.7)	29(20.7)	9(6.4)	-
학 력	중졸	6(4.4)	-	3(2.2)	2(1.5)	1(0.7)	-
	고등중퇴	1(0.7)	-	1(0.7)	-	-	-
	고졸	36(26.3)	6(4.4)	16(11.7)	10(7.3)	4(2.9)	-
	대학중퇴	2(1.5)	1(0.7)	1(0.7)	-	-	-
	대졸	67(48.9)	13(9.5)	39(28.5)	12(8.8)	3(2.2)	-
	대학원(석사)	16(11.7)	4(2.9)	9(6.6)	2(1.5)	1(0.7)	-
	대학원(박사)	3(2.2)	-	3(2.2)	-	-	-
	기타	6(4.4)	3(2.2)	3(2.2)	-	-	-
합 계	137(100)	24(17.5)	75(54.7)	29(21.2)	9(6.6)	-	
소 득	100~149만원	3(2.2)	-	2(1.5)	1(0.7)	-	-
	150~199만원	8(5.9)	1(0.7)	4(3.0)	1(0.7)	2(1.5)	-
	200~249만원	29(21.5)	5(3.7)	15(11.1)	7(5.2)	2(1.5)	-
	250~299만원	22(16.3)	5(3.7)	15(11.1)	-	2(1.5)	-
	300~349만원	24(17.8)	4(3.0)	15(11.1)	4(3.0)	1(0.7)	-
	350~399만원	13(9.6)	4(3.0)	4(3.0)	5(3.7)	-	-
	400만원이상	34(25.2)	5(3.7)	20(14.8)	7(5.2)	2(1.5)	-
	기 타	2(1.5)	-	-	2(1.5)	-	-
합 계	135(100)	24(17.8)	75(55.6)	27(20.0)	9(6.7)	-	
출신 지역	광주	20(14.7)	2(1.5)	12(8.8)	5(3.7)	1(0.7)	-
	전북	43(31.6)	9(6.6)	25(18.4)	7(5.1)	2(1.5)	-
	전남	62(45.6)	12(8.8)	31(22.8)	13(9.6)	6(4.4)	-
	제주	8(5.9)	1(0.7)	4(2.9)	3(2.2)	-	-
	기타	3(2.2)	-	3(2.2)	-	-	-
	합계	136(100)	24(17.6)	75(55.1)	28(20.6)	9(6.6)	-

## 5) 사형제도 폐지

-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32>와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동의 한다' 남성(47%), 여성(65%)로 여성이 남성보다 18%로 높게 나타났다.
-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40명 중 50대(22.2%), 40대(18.6%), 60대(10.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대졸(30.6%), 고졸(11.7%), 대학원 석사(8%)순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 소득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400만원 이상(14.1%), 200~249만원(12.6%), 300~349원(10.4%), 250~300(8.8%), 350~399(5.2%)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136명 중 전남(28.7%), 전북(13.7%), 광주(9.5%), 제주(1.4%)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2> 사형제도 폐지 (단위: 명, %)

구 분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115(83.9)	28(20.4)	37(27.0)	19(13.9)	23(16.8)	8(5.8)
	여	21(15.3)	9(6.6)	5(3.6)	6(4.4)	-	1(0.7)
	기타	1(0.7)	-	1(0.7)	-	-	-
	합 계	137(100)	37(27.0)	43(31.4)	25(18.2)	23(16.8)	9(6.6)
연 령	30대	4(2.9)	2(1.4)	2(1.4)	-	-	-
	40대	42(30.0)	15(10.7)	11(7.9)	8(5.7)	7(5.0)	1(0.7)
	50대	59(42.1)	13(9.3)	18(12.9)	11(7.9)	10(7.1)	7(5.0)
	60대	28(20.0)	5(3.6)	10(7.1)	6(4.3)	6(4.3)	1(0.7)
	70대 이상	7(5.0)	2(1.4)	4(2.9)	1(0.7)	-	-
	합 계	140(100)	37(26.4)	45(32.1)	26(18.6)	23(16.4)	9(6.4)
소 득	100~149만원	3(2.2)	-	1(0.7)	1(0.7)	1(0.7)	-
	150~199만원	8(5.9)	1(0.7)	5(3.7)	-	1(0.7)	1(0.7)
	200~249만원	29(21.5)	10(7.4)	7(5.2)	5(3.7)	5(3.7)	2(1.5)
	250~299만원	22(16.3)	6(4.4)	6(4.4)	3(2.2)	3(2.2)	4(3.0)
	300~349만원	24(17.8)	7(5.2)	7(5.2)	4(3.0)	6(4.4)	-
	350~399만원	13(9.6)	4(3.0)	3(2.2)	3(2.2)	3(2.2)	-
	400만원이상	34(25.2)	9(6.7)	10(7.4)	9(6.7)	4(3.0)	2(1.5)
	기 타	2(1.5)	-	2(1.5)	-	-	-
	합 계	135(100)	37(27.4)	41(30.4)	25(18.5)	23(17.0)	9(6.7)
학 력	중졸	6(4.4)	-	3(2.2)	-	1(0.7)	2(1.5)
	고등중퇴	1(0.7)	-	-	1(0.7)	-	-
	고졸	36(26.3)	7(5.1)	9(6.6)	8(5.8)	8(5.8)	4(2.9)
	대학중퇴	2(1.5)	1(0.7)	1(0.7)	-	-	-
	대졸	67(48.9)	21(15.3)	21(15.3)	10(7.3)	12(8.8)	3(2.2)
	대학원(석사)	16(11.7)	6(4.4)	5(3.6)	4(2.9)	1(0.7)	-
	대학원(박사)	3(2.2)	-	2(1.5)	1(0.7)	-	-
	기타	6(4.4)	2(1.5)	2(1.5)	1(0.7)	1(0.7)	-
	합 계	137(100)	37(27.0)	43(31.4)	25(18.2)	23(16.8)	9(6.6)
출신 지역	광주	20(14.7)	9(6.6)	4(2.9)	4(2.9)	2(1.5)	1(0.7)
	전북	43(31.6)	8(5.9)	12(8.8)	10(7.4)	10(7.4)	3(2.2)
	전남	62(45.6)	17(12.5)	22(16.2)	11(8.1)	8(5.9)	4(2.9)
	제주	8(5.9)	2(1.5)	3(2.2)	-	2(1.5)	1(0.7)
	기타	3(2.2)	1(0.7)	1(0.7)	-	1(0.7)	-
	합계	136(100)	37(27.2)	42(30.9)	25(18.4)	23(16.9)	9(6.6)

**6)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체벌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교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 허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33>와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동의 한다' 남성(59.2%), 여성(50%)로 남성이 여성보다 9.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보다 남성이 체벌에 대해서는 허용적이다.
-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40명 중 50대(31.4%), 40대(17.1%), 60대(13.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에 대해 허용하는 수준이 50대가 가장 높은 것은 우리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50대가 체벌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고, 이 세대는 체벌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력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대졸(32.1%), 고졸(19.7%), 대학원 석사(7.3%)순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 소득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400만원 이상(18.6%), 200~249만원(14.1%), 250~300(12.6%), 300~349(10.1%), 350~399(3.7%)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136명 중 전남(29.6%), 전북(21.3%), 광주(9.5%), 제주(2.9%)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3>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체벌에 대한 허용정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115(83.9)	12(8.8)	69(50.4)	17(12.4)	15(10.9)	2(1.5)
	여	21(15.3)	2(1.5)	8(5.8)	5(3.6)	4(2.9)	2(1.5)
	기타	1(0.7)	-	-	1(0.7)	-	-
	합 계	137(100)	14(10.2)	77(56.2)	23(16.8)	19(13.9)	4(2.9)
연 령	30대	4(2.9)	1(0.7)	1(0.7)	-	2(1.4)	-
	40대	42(30.0)	1(0.7)	23(16.4)	8(5.7)	7(5.0)	3(2.1)
	50대	59(42.1)	9(6.4)	35(25.0)	10(7.1)	4(2.9)	1(0.7)
	60대	28(20.0)	3(2.1)	16(11.4)	3(2.1)	6(4.3)	-
	70대 이상	7(5.0)	1(0.7)	3(2.1)	3(2.1)	-	-
	합 계	140(100)	15(10.7)	78(55.7)	24(17.1)	19(13.6)	4(2.9)
학 력	중졸	6(4.4)	1(0.7)	3(2.2)	1(0.7)	1(0.7)	-
	고등중퇴	1(0.7)	-	1(0.7)	-	-	-
	고졸	36(26.3)	6(4.4)	21(15.3)	4(2.9)	5(3.6)	-
	대학중퇴	2(1.5)	-	-	-	2(1.5)	-
	대졸	67(48.9)	7(5.1)	37(27.0)	13(9.5)	8(5.8)	2(1.5)
	대학원(석사)	16(11.7)	-	10(7.3)	1(0.7)	3(2.2)	2(1.5)
	대학원(박사)	3(2.2)	-	2(1.5)	1(0.7)	-	-
	기타	6(4.4)	-	3(2.2)	3(2.2)	-	-
합 계	137(100)	14(10.2)	77(56.2)	23(16.8)	19(13.9)	4(2.9)	
소 득	100~149만원	3(2.2)	-	3(2.2)	-	-	-
	150~199만원	8(5.9)	1(0.7)	4(3.0)	1(0.7)	2(1.5)	-
	200~249만원	29(21.5)	5(3.7)	14(10.4)	5(3.7)	5(3.7)	-
	250~299만원	22(16.3)	3(2.2)	14(10.4)	4(3.0)	-	1(0.7)
	300~349만원	24(17.8)	1(0.7)	14(10.4)	4(3.0)	4(3.0)	1(0.7)
	350~399만원	13(9.6)	-	5(3.7)	3(2.2)	3(2.2)	2(1.5)
	400만원이상	34(25.2)	4(3.0)	21(15.6)	4(3.0)	5(3.7)	-
	기 타	2(1.5)	-	1(0.7)	1(0.7)	-	-
합 계	135(100)	14(10.4)	76(56.3)	22(16.3)	19(14.1)	4(3.0)	
출신 지역	광주	20(14.7)	1(0.7)	12(8.8)	5(3.7)	2(1.5)	-
	전북	43(31.6)	5(3.7)	24(17.6)	5(3.7)	6(4.4)	3(2.2)
	전남	62(45.6)	8(5.9)	35(25.7)	10(7.4)	8(5.9)	1(0.7)
	제주	8(5.9)	-	4(2.9)	2(1.5)	2(1.5)	-
	기타	3(2.2)	-	2(1.5)	-	1(0.7)	-
	합계	136(100)	14(10.3)	77(56.6)	22(16.2)	19(14.0)	4(2.9)

**7)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은 거부할 수 있다.**

-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은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34>와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반대 한다' 남성(37.8%), 여성(50%)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당사자로서 갖는 형편성의 문제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38명 중 50대(32.6%), 40대(16.7%), 60대(16.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60대는 군 의무복무와 관련해서는 매우 원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대졸(36.3%), 고졸(20.3%), 대학원 석사(7.0%)순으로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 소득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400만원 이상(19.6%), 300~349원(13.5%), 200~249만원(15%), 250~299(11.3%), 350~399(6.1%)순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134명 중 전남(32%), 전북(21.4%), 광주(11.2%), 제주(4.5%)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반대한다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병역의무 거부가 악용될 가능성과 함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2-34>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단위: 명, %)

구 분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113(83.7)	4(3.0)	6(4.4)	17(12.6)	51(37.8)	-
	여	21(15.6)	3(2.2)	3(2.2)	5(3.7)	8(5.9)	2(1.5)
	기타	1(0.7)	-	-	-	1(0.7)	-
	합 계	135(100)	7(5.2)	9(6.7)	22(16.3)	60(44.4)	37(27.4)
연 령	30대	4(2.9)	-	2(1.4)	-	1(0.7)	1(0.7)
	40대	41(29.7)	6(4.3)	5(3.6)	7(5.1)	15(10.9)	8(5.8)
	50대	58(42.0)	1(0.7)	2(1.4)	10(7.2)	25(18.1)	20(14.5)
	60대	28(20.3)	-	-	5(3.6)	15(10.9)	8(5.8)
	70대 이상	7(5.1)	-	-	1(0.7)	6(4.3)	-
	합 계	138(100)	7(5.1)	9(6.5)	23(16.7)	62(44.9)	37(26.8)
학 력	중졸	6(4.4)	-	-	-	4(3.0)	2(1.5)
	고등중퇴	1(0.7)	-	-	1(0.7)	-	-
	고졸	35(25.9)	1(0.7)	2(1.5)	5(3.7)	13(9.6)	14(10.4)
	대학중퇴	2(1.5)	-	-	2(1.5)	-	-
	대졸	66(48.9)	4(3.0)	5(3.7)	8(5.9)	33(24.4)	16(11.9)
	대학원(석사)	16(11.9)	2(1.5)	2(1.5)	2(1.5)	6(4.4)	4(3.0)
	대학원(박사)	3(2.2)	-	-	2(1.5)	1(0.7)	-
	기타	6(4.4)	-	-	2(1.5)	3(2.2)	1(0.7)
	합 계	135(100)	7(5.2)	9(6.7)	22(16.3)	60(44.4)	37(27.4)
소 득	100~149만원	2(1.5)	-	-	-	1(0.8)	1(0.8)
	150~199만원	8(6.0)	-	-	3(2.3)	3(2.3)	2(1.5)
	200~249만원	29(21.8)	1(0.8)	3(2.3)	5(3.8)	10(7.5)	10(7.5)
	250~299만원	21(15.8)	1(0.8)	2(1.5)	3(2.3)	8(6.0)	7(5.3)
	300~349만원	24(18.0)	1(0.8)	1(0.8)	4(3.0)	16(12.0)	2(1.5)
	350~399만원	13(9.8)	1(0.8)	3(2.3)	1(0.8)	5(3.8)	3(2.3)
	400만원이상	34(25.6)	3(2.3)	-	5(3.8)	15(11.3)	11(8.3)
	기 타	2(1.5)	-	-	1(0.8)	1(0.8)	-
	합 계	133(100)	7(5.3)	9(6.8)	22(16.5)	59(44.4)	36(27.1)
출신 지역	광주	20(14.9)	1(0.7)	2(1.5)	2(1.5)	10(7.5)	5(3.7)
	전북	42(31.3)	2(1.5)	3(2.2)	8(6.0)	15(11.2)	14(10.4)
	전남	61(45.5)	4(3.0)	4(3.0)	10(7.5)	27(20.1)	16(11.9)
	제주	8(6.0)	-	-	2(1.5)	4(3.0)	2(1.5)
	기타	3(2.2)	-	-	3(2.2)	-	-
	합계	134(100)	7(5.2)	9(6.7)	22(16.4)	59(44.0)	37(27.6)

## 8)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소지품 검사 허용정도

-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소지품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35>와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동의 한다' 남성(39.4%), 여성(51%)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40명 중 50대(18.6%), 40대(17.8%), 60대(13.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대졸(23.4%), 고졸(13.1%), 대학원 석사(6.40%)순으로 동의 한다고 응답하였다.
- 소득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400만원 이상(11.8%), 300~349원(6.6%), 200~249만원(9.6%), 250~299(8.2%), 350~399(6.1%)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136명 중 전남(24.3%), 전북(14.7%), 광주(7.4%), 제주(1.5%)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출신지역 등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부당함에 동의한다고 하는 응답률이 '중간이다'(24%)와 '반대 한다'(22%) 등도 고르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소지품 중 유해한 물건 소지 여부에 대한 통제를 바라는 마음과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들이 다소 문제는 있으나 소지품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35> 학교에서의 학생소지품 검사에 대한 허용정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115(83.9)	3(2.2)	51(37.2)	31(22.6)	25(18.2)	5(3.6)
	여	21(15.3)	5(3.6)	8(5.8)	2(1.5)	6(4.4)	-
	기타	1(0.7)	-	-	1(0.7)	-	-
	합 계	137(100)	8(5.8)	59(43.1)	34(24.8)	31(22.6)	5(3.6)
연 령	30대	4(2.9)	-	3(2.1)	1(0.7)	-	-
	40대	42(30)	8(5.7)	17(12.1)	7(5.0)	10(7.1)	-
	50대	59(42.1)	-	26(18.6)	17(12.1)	13(9.3)	3(2.1)
	60대	28(20.0)	-	11(7.9)	8(5.7)	7(5.0)	2(1.4)
	70대 이상	7(5.0)	-	3(2.1)	1(0.7)	3(2.1)	-
	합 계	140(100)	8(5.7)	60(42.9)	34(24.3)	33(23.6)	5(3.6)
학 령	중졸	6(4.4)	-	1(0.7)	1(0.7)	2(1.5)	2(1.5)
	고등중퇴	1(0.7)	-	1(0.7)	-	-	-
	고졸	36(26.3)	-	18(13.1)	11(8.0)	5(3.6)	2(1.5)
	대학중퇴	2(1.5)	-	1(0.7)	1(0.7)	-	-
	대졸	67(48.9)	3(2.2)	29(21.2)	14(10.2)	20(14.6)	1(0.7)
	대학원(석사)	16(11.7)	3(2.2)	6(4.4)	4(2.9)	3(2.2)	-
	대학원(박사)	3(2.2)	1(0.7)	-	1(0.7)	1(0.7)	-
	기타	6(4.4)	1(0.7)	3(2.2)	2(1.5)	-	-
	합 계	137(100)	8(5.8)	59(43.1)	34(24.8)	31(22.6)	5(3.6)
소 득	100~149만원	3(2.2)	-	2(1.5)	-	1(0.7)	-
	150~199만원	8(5.9)	-	5(3.7)	2(1.5)	-	1(0.7)
	200~249만원	29(21.5)	1(0.7)	12(8.9)	10(7.4)	5(3.7)	1(0.7)
	250~299만원	22(16.3)	2(1.5)	9(6.7)	5(3.7)	4(3.0)	2(1.5)
	300~349만원	24(17.8)	1(0.7)	8(5.9)	8(5.9)	6(4.4)	1(0.7)
	350~399만원	13(9.6)	1(0.7)	7(5.2)	4(3.0)	1(0.7)	-
	400만원이상	34(25.2)	3(2.2)	13(9.6)	4(3.0)	14(10.4)	-
	기 타	2(1.5)	-	2(1.5)	-	-	-
	합 계	135(100)	8(5.9)	58(43.0)	33(24.4)	31(3.7)	5(3.7)
출신 지역	광주	20(14.7)	-	10(7.4)	6(4.4)	4(2.9)	-
	전북	43(31.6)	5(3.7)	15(11.0)	8(5.9)	12(8.8)	3(2.2)
	전남	62(45.6)	2(1.5)	31(22.8)	16(11.8)	11(8.1)	2(1.5)
	제주	8(5.9)	1(0.7)	1(0.7)	2(1.5)	4(2.9)	-
	기타	3(2.2)	-	2(1.5)	1(0.7)	-	-
	합계	136(100)	8(5.9)	59(43.4)	33(24.3)	31(22.8)	5(3.7)

## 제6절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 1.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인식

- 차별 관련 현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36>과 같다.
- 차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인식을 보면,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96.4%),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85%), 장애인에게, 공무원시험, 취업, 납세, 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84%), 민간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75%),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72%).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66.5). 여성에게, 공무원시험, 취업, 진학 등에서 일정비율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45%), 동성애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25.6%), 출신학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9.3%) 순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나 요금의 인상해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납세, 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등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재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의 표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차별관련 현안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에게 공무원시험, 취업, 진학 등에서 일정비율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45%), 동성애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25.9%). 출신학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9.3%)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원들의 수용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여성 할당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보수적인 입장이 우세하고, 동성애자 인정이나 학벌차별에 대해 지방의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성애자를 인정해야 한다(25.9%)가



다른 차별현안에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에서 아직까지 성적소수자에 대해 극단적 의견 차이를 대면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은 출신학교가 곧 신분의 차이로 인정되는 우리사회의 교육현실에 대한 반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접근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아져야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2-36>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단위: 명, %)

인권침해 현안에 대한 의식	N	동의한다	중간이다	동의하지 않음
여성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진학 등에서 일정비율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n=140	63명 (45%)	30명 (21.4%)	47명 (33.6%)
민간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n=140	105명 (75%)	24명 (17.1%)	11명 (7.9%)
장애인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납세, 대학 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n=135	116명 (84%)	19명 (13.8%)	3명 (2.2%)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한다.	n=140	93명 (66.5%)	26명 (18.6%)	21명 (15%)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n=139	36명 (25.9%)	31명 (22.3%)	72명 (51.8%)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n=140	135명 (96.4%)	5명 (3.6%)	-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n=140	119명 (85%)	17명 (12.1%)	4명 (2.8%)
출신학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n=140	13명 (9.3%)	22명 (15.6%)	105명 (75%)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한다.	n=139	100명 (72%)	25명 (18.0%)	14명 (10.1%)

## 2. 차별현안의 심각성에 대한 지방의원 의원들의 인식비율

차별 관련 현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 율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 순위별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37>, <표 2-38>, <표 2-39>, <표 2-40>, <표 2-41>, <표 2-42>, <표 2-43>, <표 2-44>, <표 2-45>와 같음.

### 1)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의 의무 설치해야 한다.

-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의 의무 설치해야한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37>과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동의 한다’ 남성(81.1%), 여성(95%)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녀 공히 대중교통 시설의 장애인 시설의무화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40명 중 50대(40.7%), 40대(28.5%), 60대(19.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대졸(47.5%), 고졸(24.8%), 대학원 석사(10.9%)순으로 동의 한다고 응답하였다.
- 소득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400만원 이상(24.2%), 200~249만원(19.6%), 300~349원(17.1%), 250~299(15.6%), 350~399(8.2%)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136명 중 전남(44.8%), 전북(30.1%), 광주(14.8%), 제주(2.2%)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출신지역 등에서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익시설 제공이 전체적으로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2-37>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의 의무설치 (단위: 명, %)

구 분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115(83.9)	49(35.8)	62(45.3)	4(2.9)	-	-
	여	21(15.3)	13(9.5)	7(5.1)	1(0.7)	-	-
	기타	1(0.7)	1(0.7)	-	-	-	-
	합 계	137(100)	<b>63(46.0)</b>	<b>69(50.4)</b>	5(3.6)	-	-
연 령	30대	4(2.9)	3(2.1)	1(0.7)	-	-	-
	40대	42(30)	23(16.4)	17(12.1)	2(1.4)	-	-
	50대	59(42.1)	23(16.4)	34(24.3)	2(1.4)	-	-
	60대	28(20.0)	11(7.9)	16(11.4)	1(0.7)	-	-
	70대 이상	7(5.0)	4(2.9)	3(2.1)	-	-	-
	합 계	140(100)	<b>64(45.7)</b>	<b>71(50.7)</b>	5(3.6)	-	-
학 령	중졸	6(4.4)	1(0.7)	5(3.6)	-	-	-
	고등중퇴	1(0.7)	-	1(0.7)	-	-	-
	고졸	36(26.3)	19(13.9)	15(10.9)	2(1.5)	-	-
	대학중퇴	2(1.5)	2(1.5)	-	-	-	-
	대졸	67(48.9)	26(19.0)	39(28.5)	2(1.5)	-	-
	대학원(석사)	16(11.7)	8(5.8)	7(5.1)	1(0.7)	-	-
	대학원(박사)	3(2.2)	3(2.2)	-	-	-	-
	기타	6(4.4)	4(2.9)	2(1.5)	-	-	-
합 계	137(100)	<b>63(46.0)</b>	<b>69(50.4)</b>	5(3.6)	-	-	
소 득	100~149만원	3(2.2)	2(1.5)	1(0.7)	-	-	-
	150~199만원	8(5.9)	5(3.7)	3(2.2)	-	-	-
	200~249만원	29(21.5)	12(8.9)	16(11.9)	1(0.7)	-	-
	250~299만원	22(16.3)	11(8.1)	10(7.4)	1(0.7)	-	-
	300~349만원	24(17.8)	9(6.7)	14(10.4)	1(0.7)	-	-
	350~399만원	13(9.6)	7(5.2)	4(3.0)	2(1.5)	-	-
	400만원이상	34(25.2)	16(11.9)	18(13.3)	-	-	-
	기 타	2(1.5)	-	2(1.5)	-	-	-
	합 계	135(100)	<b>62(45.9)</b>	<b>68(50.4)</b>	5(3.7)	-	-
출신 지역	광주	20(14.7)	10(7.4)	10(7.4)	-	-	-
	전북	43(31.6)	18(13.2)	23(16.9)	2(1.5)	-	-
	전남	62(45.6)	29(21.3)	32(23.5)	1(0.7)	-	-
	제주	8(5.9)	3(2.2)	3(2.2)	2(1.5)	-	-
	기타	3(2.2)	2(1.5)	1(0.7)	-	-	-
	합계	136(100)	<b>62(45.6)</b>	<b>69(50.7)</b>	5(3.7)	-	-

**2)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를 대우를 받아야 한다.**

-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를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38>과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동의 한다' 남성(54.8%), 여성(75%)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그에 따른 문제의식과 개선의 의지가 더 적극적이며 간절하다고 할 수 있다.
-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40명 중 50대(27.1%), 40대(20%), 60대(14.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대졸(28.5%), 고졸(18.3%), 대학원 석사(8.8%)순으로 동의 한다고 응답하였다.
- 소득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400만원이상(17.1%), 200~249만원(17.1%), 300~349원(11.1%), 250~299(10.3%), 350~399(4.5%)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136명 중 전남(29.5%), 전북(22.1%), 광주(9.6%), 제주(2.9%)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8> 비정규직 대우문제 (단위: 명, %)

구 분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115(83.9)	26(19.0)	49(35.8)	22(16.1)	14(10.2)	4(2.9)
	여	21(15.3)	7(5.1)	8(5.8)	3(2.2)	3(2.2)	-
	기타	1(0.7)	-	1(0.7)	-	-	-
	합 계	137(100)	33(24.1)	58(42.3)	25(18.2)	17(12.4)	4(2.9)
연 령	30대	4(2.9)	1(0.7)	2(1.4)	1(0.7)	-	-
	40대	42(30)	13(9.3)	15(10.7)	6(4.3)	6(4.3)	2(1.4)
	50대	59(42.1)	14(10.0)	24(17.1)	10(7.1)	9(6.4)	2(1.4)
	60대	28(20.0)	5(3.6)	15(10.7)	7(5.0)	1(0.7)	-
	70대 이상	7(5.0)	-	4(2.9)	2(1.4)	1(0.7)	-
	합 계	140(100)	33(23.6)	60(42.9)	26(18.6)	17(12.1)	4(2.9)
학 령	중졸	6(4.4)	2(1.5)	2(1.5)	1(0.7)	1(0.7)	-
	고등중퇴	1(0.7)	-	1(0.7)	-	-	-
	고졸	36(26.3)	12(8.8)	13(9.5)	5(3.6)	6(4.4)	-
	대학중퇴	2(1.5)	1(0.7)	1(0.7)	-	-	-
	대졸	67(48.9)	13(9.5)	26(19.0)	16(11.7)	9(6.6)	3(2.2)
	대학원(석사)	16(11.7)	3(2.2)	9(6.6)	3(2.2)	-	1(0.7)
	대학원(박사)	3(2.2)	1(0.7)	1(0.7)	-	1(0.7)	-
	기타	6(4.4)	1(0.7)	5(3.6)	-	-	-
합 계	137(100)	33(24.1)	58(42.3)	25(18.2)	17(12.4)	4(2.9)	
소 득	100~149만원	3(2.2)	1(0.7)	1(0.7)	1(0.7)	-	-
	150~199만원	8(5.9)	2(1.5)	3(2.2)	3(2.2)	-	-
	200~249만원	29(21.5)	7(5.2)	16(11.9)	3(2.2)	2(1.5)	1(0.7)
	250~299만원	22(16.3)	6(4.4)	8(5.9)	3(2.2)	3(2.2)	2(1.5)
	300~349만원	24(17.8)	4(3.0)	11(8.1)	4(3.0)	5(3.7)	-
	350~399만원	13(9.6)	4(3.0)	2(1.5)	6(4.4)	1(0.7)	-
	400만원 이상	34(25.2)	9(6.7)	14(10.4)	5(3.7)	5(3.7)	1(0.7)
	기 타	2(1.5)	-	1(0.7)	-	1(0.7)	-
	합 계	135(100)	33(24.4)	56(41.5)	25(18.5)	17(12.6)	4(3.0)
출신 지역	광주	20(14.7)	3(2.2)	10(7.4)	4(2.9)	1(0.7)	2(1.5)
	전북	43(31.6)	14(10.3)	16(11.8)	5(3.7)	7(5.1)	1(0.7)
	전남	62(45.6)	13(9.6)	27(19.9)	13(9.6)	8(5.9)	1(0.7)
	제주	8(5.9)	3(2.2)	1(0.7)	3(2.2)	1(0.7)	-
	기타	3(2.2)	-	3(2.2)	-	-	-
	합계	136(100)	33(24.3)	57(41.9)	25(18.4)	17(12.5)	4(2.9)

**3)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39>와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동의 한다' 남성(70.8%), 여성(90%)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40명 중 50대(35%), 40대(26.4%), 60대(16.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대졸(43.1%), 고졸(20.5%), 대학원 석사(10.2%)순으로 동의 한다고 응답하였다.
- 소득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400만원 이상(23%), 200~249만원(19.3%), 300~349만원(15.5%), 250~299만원(14.8%), 350~399만원(5.2%)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136명 중 전남(41.1%), 전북(25%), 광주(11.8%), 제주(5.1%)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9>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를 위한 세금 및 요금인상 (단위: 명, %)

구 분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115(83.9)	27(19.7)	70(51.1)	14(10.2)	3(2.2)	1(0.7)
	여	21(15.3)	12(8.8)	7(5.1)	2(1.5)	-	-
	기타	1(0.7)	-	1(0.7)	-	-	-
	합 계	137(100)	39(28.5)	78(56.9)	16(11.7)	3(2.2)	1(0.7)
연 령	30대	4(2.9)	3(2.1)	1(0.7)	-	-	-
	40대	42(30)	16(11.4)	21(15.0)	4(2.9)	1(0.7)	-
	50대	59(42.1)	15(10.7)	34(24.3)	9(6.4)	1(0.7)	-
	60대	28(20.0)	3(2.1)	20(14.3)	3(2.1)	1(0.7)	1(0.7)
	70대 이상	7(5.0)	3(2.1)	3(2.1)	1(0.7)	-	-
	합 계	140(100)	40(28.6)	79(56.4)	17(12.1)	3(2.1)	1(0.7)
학 령	중졸	6(4.4)	-	5(3.6)	1(0.7)	-	-
	고등중퇴	1(0.7)	-	1(0.7)	-	-	-
	고졸	36(26.3)	9(6.6)	19(13.9)	6(4.4)	1(0.7)	1(0.7)
	대학중퇴	2(1.5)	-	2(1.5)	-	-	-
	대졸	67(48.9)	19(13.9)	40(29.2)	7(5.1)	1(0.7)	-
	대학원(석사)	16(11.7)	6(4.4)	8(5.8)	1(0.7)	1(0.7)	-
	대학원(박사)	3(2.2)	2(1.5)	1(0.7)	-	-	-
	기타	6(4.4)	3(2.2)	2(1.5)	1(0.7)	-	-
합 계	137(100)	39(28.5)	78(56.9)	16(11.7)	3(2.2)	1(0.7)	
소 득	100~149만원	3(2.2)	2(1.5)	1(0.7)	-	-	-
	150~199만원	8(5.9)	1(0.7)	6(4.4)	1(0.7)	-	-
	200~249만원	29(21.5)	10(7.4)	16(11.9)	2(1.5)	-	1(0.7)
	250~299만원	22(16.3)	6(4.4)	14(10.4)	2(1.5)	-	-
	300~349만원	24(17.8)	6(4.4)	15(11.1)	3(2.2)	-	-
	350~399만원	13(9.6)	4(3.0)	3(2.2)	4(3.0)	2(1.5)	-
	400만원이상	34(25.2)	10(7.4)	21(15.6)	2(1.5)	1(0.7)	-
	기 타	2(1.5)	-	1(0.7)	1(0.7)	-	-
합 계	135(100)	39(28.9)	77(57.0)	15(11.1)	3(2.2)	1(0.7)	
출신 지역	광주	20(14.7)	10(7.4)	6(4.4)	4(2.9)	-	-
	전북	43(31.6)	12(8.8)	22(16.2)	5(3.7)	3(2.2)	1(0.7)
	전남	62(45.6)	15(11.0)	41(30.1)	6(4.4)	-	-
	제주	8(5.9)	1(0.7)	6(4.4)	1(0.7)	-	-
	기타	3(2.2)	1(0.7)	2(1.5)	-	-	-
	합계	136(100)	39(28.7)	77(56.6)	16(11.8)	3(2.2)	1(0.7)

#### 4) 민간 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나이제한의 부당성

- 민간 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나이제한은 부당하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40>와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동의 한다' 남성(62.5%), 여성(65%)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40명 중 50대(32.1%), 40대(21.1%), 60대(14.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대졸(39.4%), 고졸(16%), 대학원 석사(9.5%)순으로 동의 한다고 응답하였다.
- 소득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400만원 이상(17.7%), 200~249만원(16.3%), 300~349만원(15.5%), 250~299만원(11.1%), 350~399만원(6.7%)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136명 중 전남(33.1%), 전북(23.5%), 광주(12.5%), 제주(4.4%)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0> 직원 채용 시 나이제한의 부당성 (단위: 명, %)

구 분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115(83.9)	16(11.7)	71(51.8)	19(13.9)	9(6.6)	-
	여	21(15.3)	6(4.4)	9(6.6)	4(2.9)	2(1.5)	-
	기타	1(0.7)	-	-	1(0.7)	-	-
	합 계	137(100)	22(16.1)	80(58.4)	24(17.5)	11(8.0)	-
연 령	30대	4(2.9)	-	4(2.9)	-	-	-
	40대	42(30)	9(6.4)	21(15.0)	7(5.0)	5(3.6)	-
	50대	59(42.1)	9(6.4)	36(25.7)	11(7.9)	3(2.1)	-
	60대	28(20.0)	4(2.9)	16(11.4)	5(3.6)	3(2.1)	-
	70대 이상	7(5.0)	-	6(4.3)	1(0.7)	-	-
	합 계	140(100)	22(15.7)	83(59.3)	24(17.1)	11(7.9)	-
학 령	중졸	6(4.4)	1(0.7)	4(2.9)	1(0.7)	-	-
	고등중퇴	1(0.7)	-	1(0.7)	-	-	-
	고졸	36(26.3)	8(5.8)	14(10.2)	8(5.8)	6(4.4)	-
	대학중퇴	2(1.5)	-	1(0.7)	1(0.7)	-	-
	대졸	67(48.9)	9(6.6)	45(32.8)	9(6.6)	4(2.9)	-
	대학원(석사)	16(11.7)	3(2.2)	10(7.3)	2(1.5)	1(0.7)	-
	대학원(박사)	3(2.2)	-	2(1.5)	1(0.7)	-	-
	기타	6(4.4)	1(0.7)	3(2.2)	-	6(4.4)	-
합 계	137(100)	22(16.1)	80(58.4)	24(17.5)	11(8.0)	-	
소 득	100~149만원	3(2.2)	1(0.7)	2(1.5)	-	-	-
	150~199만원	8(5.9)	1(0.7)	5(3.7)	2(1.5)	-	-
	200~249만원	29(21.5)	7(5.2)	15(11.1)	3(2.2)	4(3.0)	-
	250~299만원	22(16.3)	4(3.0)	11(8.1)	4(3.0)	3(2.2)	-
	300~349만원	24(17.8)	3(2.2)	18(13.3)	2(1.5)	1(0.7)	-
	350~399만원	13(9.6)	-	9(6.7)	3(2.2)	1(0.7)	-
	400만원이상	34(25.2)	6(4.4)	18(13.3)	9(6.7)	1(0.7)	-
	기 타	2(1.5)	-	2(1.5)	-	-	-
합 계	135(100)	22(16.3)	80(59.3)	23(17.0)	10(7.4)	-	
출신 지역	광주	20(14.7)	2(1.5)	15(11.0)	-	3(2.2)	-
	전북	43(31.6)	7(5.1)	25(18.4)	8(5.9)	3(2.2)	-
	전남	62(45.6)	13(9.6)	32(23.5)	12(8.8)	5(3.7)	-
	제주	8(5.9)	-	6(4.4)	2(1.5)	-	-
	기타	3(2.2)	-	2(1.5)	1(0.7)	-	-
	합계	136(100)	22(16.2)	80(58.8)	23(16.9)	11(8.1)	-

**5) 장애인에게, 공무원시험·취업·납세·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 장애인에게, 공무원시험·취업·납세·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41>과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동의 한다' 남성(70.4%), 여성(90%)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40명 중 50대(35.5%), 40대(23.9%), 60대(1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대졸(40.0%), 고졸(23.0%), 대학원 석사(9.4%)순으로 동의 한다고 응답하였다.
- 소득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400만원 이상(21.8%), 200~249만원(17.3%), 300~349만원(15%), 250~299만원(14.3%), 350~399만원(8.3%)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136명 중 전남(35.8%), 전북(27.6%), 광주(14.2%), 제주(2.2%)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1>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단위: 명, %)

구 분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115(83.9)	27(20.0)	68(50.4)	15(11.1)	3(2.2)	-
	여	21(15.3)	6(4.4)	12(8.9)	3(2.2)	-	-
	기타	1(0.7)	1(0.7)	-	-	-	-
	합 계	137(100)	34(25.2)	80(59.3)	18(13.3)	3(2.2)	-
연 령	30대	4(2.9)	2(1.4)	2(1.4)	-	-	-
	40대	42(30)	13(9.4)	20(14.5)	7(5.1)	1(0.7)	-
	50대	59(42.1)	13(9.4)	36(26.1)	9(6.5)	1(0.7)	-
	60대	28(20.0)	5(3.6)	19(13.8)	2(1.4)	1(0.7)	-
	70대 이상	7(5.0)	1(0.7)	5(3.6)	1(0.7)	-	-
	합 계	140(100)	34(24.6)	82(59.4)	19(13.8)	3(2.2)	-
학 력	중졸	6(4.4)	-	5(3.7)	1(0.7)	-	-
	고등중퇴	1(0.7)	-	1(0.7)	-	-	-
	고졸	36(26.3)	9(6.7)	22(16.3)	5(3.7)	-	-
	대학중퇴	2(1.5)	1(0.7)	1(0.7)	-	-	-
	대졸	67(48.9)	17(12.6)	37(27.4)	8(5.9)	3(2.2)	-
	대학원(석사)	16(11.7)	3(2.2)	10(7.4)	3(2.2)	-	-
	대학원(박사)	3(2.2)	-	3(2.2)	-	-	-
	기타	6(4.4)	4(3.0)	1(0.7)	1(0.7)	-	-
합 계	137(100)	34(25.2)	80(59.3)	18(13.3)	3(2.2)	-	
소 득	100~149만원	3(2.3)	1(0.8)	1(0.8)	-	1(0.8)	-
	150~199만원	8(6.0)	2(1.5)	4(3.0)	2(1.5)	-	-
	200~249만원	29(21.8)	8(6.0)	15(11.3)	6(4.5)	-	-
	250~299만원	22(16.5)	4(3.0)	15(11.3)	3(2.3)	-	-
	300~349만원	22(16.5)	4(3.0)	16(12.0)	1(0.8)	1(0.8)	-
	350~399만원	13(9.8)	2(1.5)	9(6.8)	2(1.5)	-	-
	400만원이상	34(25.6)	12(9.0)	17(12.8)	4(3.0)	1(0.8)	-
	기 타	2(1.5)	-	2(1.5)	-	-	-
	합 계	133(100)	33(24.8)	79(59.4)	18(13.5)	3(2.3)	-
출신 지역	광주	20(14.9)	4(3.0)	15(11.2)	1(0.7)	-	-
	전북	42(31.3)	11(8.2)	26(19.4)	4(3.0)	1(0.7)	-
	전남	61(45.5)	14(10.4)	34(25.4)	12(9.0)	1(0.7)	-
	제주	8(6.0)	3(2.2)	3(2.2)	1(0.7)	1(0.7)	-
	기타	3(2.2)	1(0.7)	2(1.5)	-	-	-
	합계	134(100)	33(24.6)	80(59.7)	18(13.4)	3(2.2)	-

**6)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42>과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6명 중 '동의 한다' 남성(58.1%), 여성(90%)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녀 공히 대중교통 시설의 장애인 시설의무화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40명 중 50대(26.1%), 40대(22.3%), 60대(14.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대졸(38.2%), 고졸(14.7%), 대학원 석사(9.1%)순으로 동의 한다고 응답하였다.
- 소득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400만원 이상(17.9%), 200~249만원(13.4%), 300~349만원(12%), 250~299만원(13.4%), 350~399만원(6.0%)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136명 중 전남(32.1%), 전북(23%), 광주(11.1%), 제주(2.2%)순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2>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단위: 명, %)

구 분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114(83.8)	15(11.0)	64(47.1)	21(15.4)	10(7.4)	4(2.9)
	여	21(15.4)	9(6.6)	9(6.6)	3(2.2)	-	-
	기타	1(0.7)	-	-	1(0.7)	-	-
	합 계	136(100)	24(17.6)	73(53.7)	25(18.4)	10(7.4)	4(2.9)
연 령	30대	4(2.9)	2(1.4)	2(1.4)	-	-	-
	40대	41(29.5)	12(8.6)	19(13.7)	6(4.3)	2(1.4)	2(1.4)
	50대	59(42.4)	5(3.6)	34(24.5)	15(10.8)	3(2.2)	2(1.4)
	60대	28(20.1)	3(2.2)	17(12.2)	3(2.2)	5(3.6)	-
	70대 이상	7(5.0)	3(2.2)	3(2.2)	1(0.7)	-	-
	합 계	139(100)	25(18.0)	75(54.0)	25(18.0)	10(7.2)	4(2.9)
학 력	중졸	6(4.4)	-	4(2.9)	1(0.7)	1(0.7)	-
	고등중퇴	1(0.7)	-	1(0.7)	-	-	-
	고졸	36(26.3)	7(5.1)	13(9.6)	11(8.1)	4(2.9)	1(0.7)
	대학중퇴	2(1.5)	-	2(1.5)	-	-	-
	대졸	66(48.5)	11(8.1)	41(30.1)	6(4.4)	5(3.7)	3(2.2)
	대학원(석사)	16(11.8)	6(4.4)	7(5.1)	3(2.2)	-	-
	대학원(박사)	3(2.2)	-	3(2.2)	-	-	-
	기타	6(4.4)	-	2(1.5)	4(2.9)	-	-
	합 계	136(100)	24(17.6)	73(53.7)	25(18.4)	10(7.4)	4(2.9)
소 득	100~149만원	3(2.2)	-	1(0.7)	-	2(1.5)	-
	150~199만원	8(6.0)	2(1.5)	6(4.5)	-	-	-
	200~249만원	29(21.6)	5(3.7)	13(9.7)	8(6.0)	2(1.5)	-
	250~299만원	22(16.4)	4(3.0)	14(10.4)	3(2.2)	-	1(0.7)
	300~349만원	24(17.2)	4(3.0)	12(9.0)	4(3.0)	3(2.2)	-
	350~399만원	13(9.7)	1(0.7)	8(6.0)	3(2.2)	1(0.7)	-
	400만원이상	34(25.4)	8(6.0)	16(11.9)	6(4.5)	2(1.5)	2(1.5)
	기 타	2(1.5)	-	2(1.5)	-	-	-
	합 계	134(100)	24(17.9)	72(53.7)	24(17.9)	10(7.5)	4(3.0)
출 신 지역	광주	20(14.8)	4(3.0)	11(8.1)	3(2.2)	-	2(1.5)
	전북	42(31.1)	9(6.7)	22(16.3)	6(4.4)	3(2.2)	2(1.5)
	전남	62(45.9)	10(7.4)	32(23.7)	13(9.6)	7(5.2)	-
	제주	8(5.9)	1(0.7)	5(3.7)	2(1.5)	-	-
	기타	3(2.2)	-	3(2.2)	-	-	-
	합계	135(100)	24(17.8)	73(54.1)	24(17.8)	10(7.4)	4(3.0)

## 7) 출신학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 출신학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43>과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반대 한다' 남성(28.5%), 여성(25%)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40명 중 50대(12.1%), 60대(5.7%), 40대(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대졸(14.6%), 고졸(9.5%), 대학원 석사(4.4%)순으로 반대 한다고 응답하였다.
- 소득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400만원 이상(9.6%), 200~249만원(5.9%), 300~349만원(2.2%), 250~299만원(6.7%), 350~399만원(5.2%)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136명 중 전남(15.4%), 전북(10.3%), 광주(5.1%), 제주(0.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출신학교 차이를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이다'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의원들의 경우, 자신의 출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연이 당락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학연, 지연의 관계가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43> 출신학교 차이 인정 (단위: 명, %)

구 분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115(83.9)	11(8.0)	15(10.9)	50(36.5)	39(28.5)	-
	여	21(15.3)	1(0.7)	6(4.4)	9(6.6)	5(3.6)	-
	기타	1(0.7)	-	1(0.7)	-	-	-
	<b>합 계</b>	<b>137(100)</b>	<b>12(8.8)</b>	<b>22(16.1)</b>	<b>59(43.1)</b>	<b>44(32.1)</b>	-
연 령	30대	4(2.9)	-	-	2(1.4)	2(1.4)	-
	40대	42(30)	2(1.4)	5(3.6)	22(15.7)	13(9.3)	-
	50대	59(42.1)	6(4.3)	11(7.9)	24(17.1)	18(12.9)	-
	60대	28(20.0)	3(2.1)	5(3.6)	9(6.4)	11(7.9)	-
	70대 이상	7(5.0)	2(1.4)	1(0.7)	4(2.9)	-	-
	<b>합 계</b>	<b>140(100)</b>	<b>13(9.3)</b>	<b>22(15.7)</b>	<b>61(43.6)</b>	<b>44(31.4)</b>	-
학 력	중졸	6(4.4)	-	-	3(2.2)	3(2.2)	-
	고등중퇴	1(0.7)	-	1(0.7)	-	1(0.7)	-
	고졸	36(26.3)	5(3.6)	6(4.4)	12(8.8)	13(9.5)	-
	대학중퇴	2(1.5)	-	1(0.7)	-	1(0.7)	-
	대졸	67(48.9)	5(3.6)	8(5.8)	34(24.8)	20(14.6)	-
	대학원(석사)	16(11.7)	-	4(2.9)	6(4.4)	6(4.4)	-
	대학원(박사)	3(2.2)	1(0.7)	-	2(1.5)	-	-
	기타	6(4.4)	1(0.7)	2(1.5)	2(1.5)	1(0.7)	-
<b>합 계</b>	<b>137(100)</b>	<b>12(8.8)</b>	<b>22(16.1)</b>	<b>59(43.1)</b>	<b>44(32.1)</b>	-	
소 득	100~149만원	3(2.2)	1(0.7)	1(0.7)	1(0.7)	-	-
	150~199만원	8(5.9)	-	1(0.7)	3(2.2)	4(3.0)	-
	200~249만원	29(21.5)	4(3.0)	6(4.4)	11(8.1)	8(5.9)	-
	250~299만원	22(16.3)	3(2.2)	2(1.5)	8(5.9)	9(6.7)	-
	300~349만원	24(17.8)	4(3.0)	4(3.0)	13(9.6)	3(2.2)	-
	350~399만원	13(9.6)	-	3(2.2)	3(2.2)	7(5.2)	-
	400만원이상	34(25.2)	-	3(2.2)	18(13.3)	13(9.6)	-
	기 타	2(1.5)	-	1(0.7)	1(0.7)	-	-
	<b>합 계</b>	<b>135(100)</b>	<b>12(8.9)</b>	<b>21(15.3)</b>	<b>58(43.0)</b>	<b>44(32.6)</b>	-
출 신 지 역	광주	20(14.7)	2(1.5)	3(2.2)	8(5.9)	7(5.1)	-
	전북	43(31.6)	3(2.2)	5(3.7)	21(15.4)	14(10.3)	-
	전남	62(45.6)	7(5.1)	11(8.1)	23(16.9)	21(15.4)	-
	제주	8(5.9)	-	1(0.7)	6(4.4)	1(0.7)	-
	기타	3(2.2)	-	1(0.7)	1(0.7)	1(0.7)	-
	<b>합계</b>	<b>136(100)</b>	<b>12(8.8)</b>	<b>21(15.4)</b>	<b>59(43.4)</b>	<b>44(32.4)</b>	-

**8) 여성에게, 공무원시험·진학 등에서 일정비율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여성에게, 공무원시험·진학 등에서 일정비율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44>과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반대 한다' 남성(24.8%), 여성(0.5%)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40명 중 50대(16.4%), 40대(8.6%), 60대(6.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대졸(22.6%), 고졸(11.7%), 대학원 석사(5.1%)순으로 동의 한다고 응답하였다.
- 소득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400만원 이상(11.8%), 200~249만원(8.9%), 300~349만원(7.4%), 250~299만원(8.1%), 350~399만원(5.9%)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136명 중 전남(22.1%), 전북(14.1%), 광주(5.1%), 제주(1.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 의원들의 경우, 여성 할당제에 대한 견해가 '중간이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성적으로는 사회적 변화와 흐름에 부응하나 자신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심리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표 2-44> 여성할당제 (단위: 명, %)

구 분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115(83.9)	9(6.6)	40(29.2)	28(20.4)	32(23.4)	6(4.4)
	여	21(15.3)	10(7.3)	3(2.2)	1(0.7)	1(0.7)	-
	기타	1(0.7)	1(0.7)	-	-	-	-
	합 계	137(100)	20(14.6)	43(31.4)	29(21.2)	39(28.5)	6(4.4)
연 령	30대	4(2.9)	1(0.7)	-	2(1.4)	1(0.7)	-
	40대	42(30)	12(8.6)	11(7.9)	7(5.0)	11(7.9)	1(0.7)
	50대	59(42.1)	4(2.9)	22(15.7)	10(7.1)	21(15.0)	2(1.4)
	60대	28(20.0)	2(1.4)	10(7.1)	8(5.7)	5(3.6)	3(2.1)
	70대 이상	7(5.0)	1(0.7)	-	3(2.1)	3(2.1)	-
	합 계	140(100)	20(14.3)	43(30.7)	30(21.4)	41(29.3)	6(4.3)
학 령	중졸	6(4.4)	-	2(1.5)	1(0.7)	2(1.5)	-
	고등중퇴	1(0.7)	1(0.7)	-	-	-	-
	고졸	36(26.3)	6(4.4)	10(7.3)	13(9.5)	6(4.4)	1(0.7)
	대학중퇴	2(1.5)	-	1(0.7)	1(0.7)	-	-
	대졸	67(48.9)	8(5.8)	23(16.8)	11(8.0)	21(15.3)	4(2.9)
	대학원(석사)	16(11.7)	2(1.5)	5(3.6)	1(0.7)	8(5.8)	-
	대학원(박사)	3(2.2)	1(0.7)	1(0.7)	-	1(0.7)	-
	기타	6(4.4)	2(1.5)	1(0.7)	2(1.5)	1(0.7)	-
	합 계	137(100)	20(14.6)	43(31.4)	29(21.2)	39(28.5)	6(4.4)
소 득	100~149만원	3(2.2)	1(0.7)	1(0.7)	1(0.7)	-	-
	150~199만원	8(5.9)	1(0.7)	2(1.5)	3(2.2)	2(1.5)	-
	200~249만원	29(21.5)	5(3.7)	7(5.2)	10(7.4)	5(3.7)	2(1.5)
	250~299만원	22(16.3)	3(2.2)	8(5.9)	3(2.2)	8(5.9)	-
	300~349만원	24(17.8)	1(0.7)	9(6.7)	4(3.0)	10(7.4)	-
	350~399만원	13(9.6)	2(1.5)	6(4.4)	2(1.5)	3(2.2)	-
	400만원이상	34(25.2)	6(4.4)	10(7.4)	4(3.0)	10(7.4)	4(3.0)
	기 타	2(1.5)	-	-	1(0.7)	1(0.7)	-
	합 계	135(100)	19(14.1)	43(31.9)	28(20.7)	39(28.9)	6(4.4)
출신 지역	광주	20(14.7)	3(2.2)	4(2.9)	5(3.7)	7(5.1)	1(0.7)
	전북	43(31.6)	6(4.4)	13(9.6)	7(5.1)	14(10.3)	3(2.2)
	전남	62(45.6)	9(6.6)	21(15.4)	16(11.8)	14(10.3)	2(1.5)
	제주	8(5.9)	1(0.7)	3(2.2)	1(0.7)	3(2.2)	-
	기타	3(2.2)	-	2(1.5)	-	1(0.7)	-
	합계	136(100)	19(14.0)	43(31.6)	29(21.3)	39(28.7)	6(4.4)

**9)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 동성애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2-45>과 같다.
-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반대 한다' 남성(44.1%), 여성(25%)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이 훨씬 수용적이다.
- 연령에서는, 전체 응답자 149명 중 50대(25.2%), 40대(12.3%), 60대(11.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에서는, 전체 응답자 137명 중 대졸(25%), 고졸(14.7%), 대학원 석사(4.4%)순으로 반대 한다고 응답하였다.
- 소득에서는, 전체 응답자 135명 중 400만원 이상(11.9%), 200~249만원(12%), 300~349만원(9.0%), 250~299만원(7.5%), 350~399만원(3.7%)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신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자 136명 중 전남(25.5%), 전북(13.8%), 광주(2.2%), 제주(1.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성애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전체적으로 '반대 한다'에 높게 나타난 것은 아직 우리사회가 동성애자를 소수로 인정하고 이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45> 동성애자 사회적 인정 (단위: 명, %)

구 분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114(83.8)	5(3.7)	20(14.7)	25(18.4)	45(33.1)	19(14.0)
	여	21(15.4)	2(1.5)	9(6.6)	5(3.7)	4(2.9)	1(0.7)
	기타	1(0.7)	-	-	-	1(0.7)	-
	<b>합 계</b>	<b>136(100)</b>	<b>7(5.1)</b>	<b>29(21.3)</b>	<b>30(22.1)</b>	<b>50(36.8)</b>	<b>20(14.7)</b>
연 령	30대	4(2.9)	-	3(2.2)	1(0.7)	-	-
	40대	41(29.5)	6(4.3)	12(8.6)	6(4.3)	9(6.5)	8(5.8)
	50대	59(42.4)	-	8(5.8)	16(11.5)	27(19.4)	8(5.8)
	60대	28(20.1)	1(0.7)	4(2.9)	7(5.0)	12(8.6)	4(2.9)
	70대 이상	7(5.0)	-	2(1.4)	1(0.7)	4(2.9)	-
	<b>합 계</b>	<b>139(100)</b>	<b>7(5.0)</b>	<b>29(20.9)</b>	<b>31(22.3)</b>	<b>52(37.4)</b>	<b>20(14.4)</b>
학 력	중졸	6(4.4)	-	-	-	6(4.4)	-
	고등중퇴	1(0.7)	-	1(0.7)	-	-	-
	고졸	36(26.5)	1(0.7)	5(3.7)	10(7.4)	12(8.8)	8(5.9)
	대학중퇴	2(1.5)	-	-	1(0.7)	1(0.7)	-
	대졸	66(48.5)	4(2.9)	15(11.0)	13(9.6)	24(17.6)	10(7.4)
	대학원(석사)	16(11.8)	2(1.5)	5(3.7)	3(2.2)	5(3.7)	1(0.7)
	대학원(박사)	3(2.2)	-	2(1.5)	1(0.7)	-	-
	기타	6(4.4)	-	1(0.7)	2(1.5)	2(1.5)	1(0.7)
<b>합 계</b>	<b>137(100)</b>	<b>7(5.1)</b>	<b>29(21.3)</b>	<b>30(22.1)</b>	<b>50(36.8)</b>	<b>20(14.7)</b>	
소 득	100~149만원	2(1.5)	-	-	-	1(0.7)	1(0.7)
	150~199만원	8(6.0)	-	1(0.7)	1(0.7)	5(3.7)	1(0.7)
	200~249만원	29(21.6)	2(1.5)	4(3.0)	7(5.2)	10(7.5)	6(4.5)
	250~299만원	22(16.4)	1(0.7)	5(3.7)	6(4.5)	6(4.5)	4(3.0)
	300~349만원	24(17.9)	1(0.7)	6(4.5)	5(3.7)	12(9.0)	-
	350~399만원	13(9.7)	1(0.7)	5(3.7)	2(1.5)	4(3.0)	1(0.7)
	400만원이상	34(25.4)	2(1.5)	8(6.0)	8(6.0)	9(6.7)	7(5.2)
	기 타	2(1.5)	-	-	1(0.7)	1(0.7)	-
<b>합 계</b>	<b>134(100)</b>	<b>7(5.2)</b>	<b>29(21.6)</b>	<b>30(22.4)</b>	<b>48(35.8)</b>	<b>20(14.9)</b>	
출 신 지 역	광주	20(14.8)	1(0.7)	4(3.0)	6(4.4)	3(2.2)	-
	전북	43(31.9)	3(2.2)	14(10.4)	6(4.4)	12(8.9)	8(5.9)
	전남	62(45.2)	3(2.2)	9(6.7)	16(11.9)	24(17.8)	9(6.7)
	제주	8(5.9)	-	2(1.5)	1(0.7)	5(3.7)	-
	기타	3(2.2)	-	-	1(0.7)	2(1.5)	-
	<b>합계</b>	<b>135(100)</b>	<b>7(5.2)</b>	<b>29(21.5)</b>	<b>30(22.2)</b>	<b>49(36.3)</b>	<b>20(14.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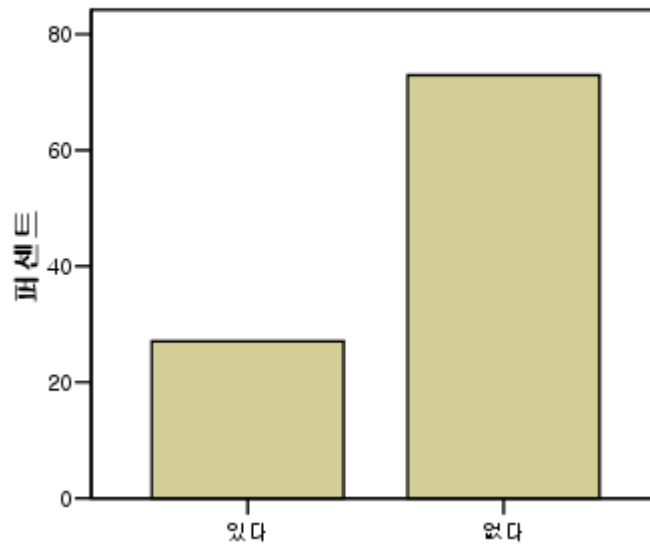
## 제7절 소속 자치단체 조례 관련 내용

### 1. 인권침해나 차별적 내용 포함한 조례 여부

#### 1) 인권침해나 차별적인 내용의 조례 존재 여부

-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소속 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인권침해나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존재하는지에 관해 조사결과는 <표2-46>과 같다.
- 응답결과는, 전체 응답자 140명중 있다36명(25.5%), 없다 97명(68.8%)로 소속 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인권침해나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43.3%가 높게 나타났다.

차별을담고있는조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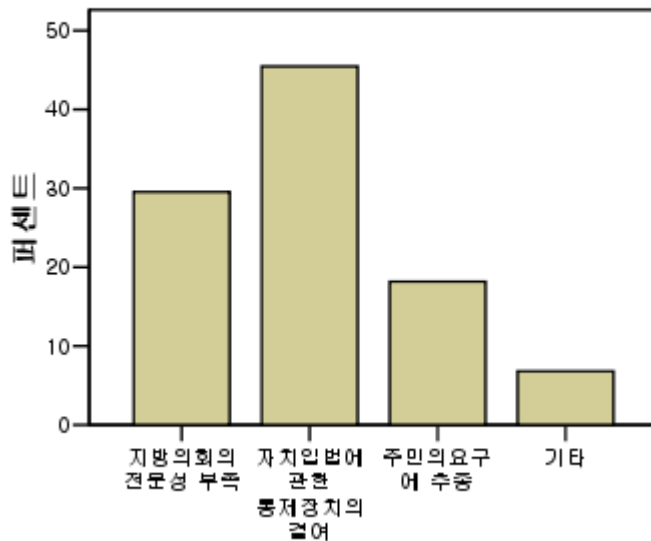


<표 2-46> 인권침해나 차별적인 내용의 조례 존재 여부 (단위: 명, %)

구 분	빈도(%)	
있다	36	25.5
없다	97	68.8
무응답	8	5.0
합계	140	100.0

- 아울러, 소속 자치단체 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적인 조례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36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2-47>과 같다.
- 그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는, 자치입법에 관한 통제장치의 결여 20명(56%), 지방 의회의 전문성 부족13명(36%), 주민의 요구에 추종 3명(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원들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역적 특색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적인 조례안 보다는 자치입법에 의한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존재하는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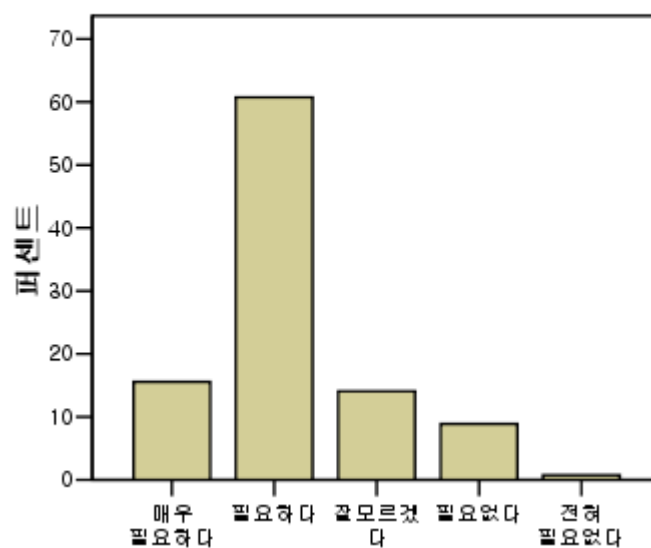
<표2-47>인권침해 또는 차별적인 조례나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빈도(%)	
지방의회 전문성 부족	13	36
자치입법에 관한 통제장치의 결여	20	56
주민의 요구에 추종	3	0.8
기타	-	-
합계	36	100.0

## 2) 지역차원의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

- 지역차원의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표2-48>와 같다. 전체 응답자 140명 중 '필요하다' 103명(73.1%), '모르겠다' 19명(13.5%), '필요 없다' 13명(9.2%)이다.
- 지방의회 의원들은 소속지역차원에서의 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73%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속지역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에 관한 조례여부에 관한 응답결과가 '없다'(68.7%)였으며 이에 따른 지역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권조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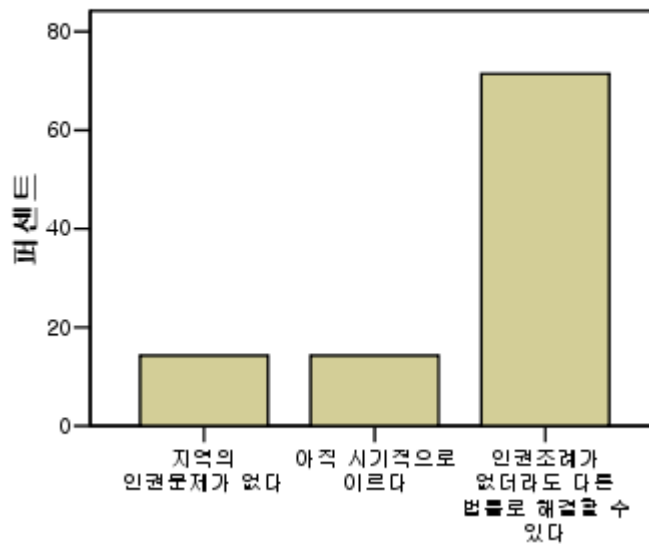


<표2-48> 지역차원의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단위: 명, %)

구 분	빈도(%)	
매우 필요하다	21	14.9
필요하다	82	58.2
잘 모르겠다	19	13.5
필요 없다	12	8.5
전혀 필요없다	1	0.7
무응답	5	3.5
합계	140	100.0

- 지역차원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13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는 <표2-49>와 같다. 지역차원의 인권침해나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인권조례가 없더라도 다른 법률로 해결가능' 9명(72%), '지역에 인권문제가 없다' 2명(14%),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2명(14%)로 조사되었다.

필요없는이유



<표2-49> 지역차원의 인권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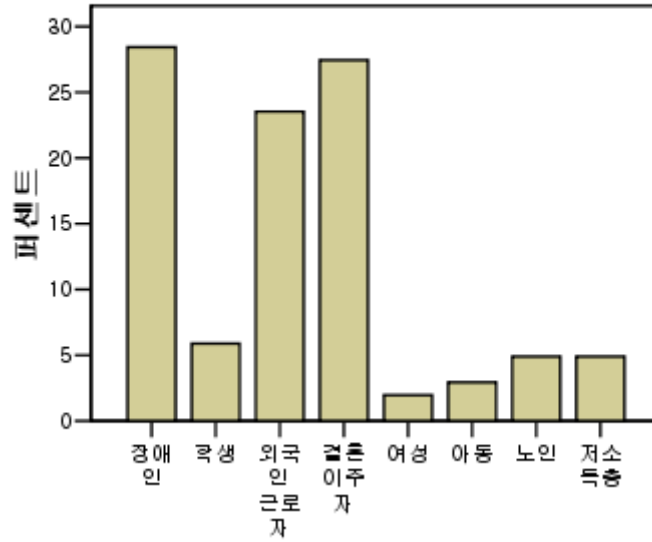
구 분	빈도(%)	
지역에 인권문제가 없다	2	14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2	14
기업이나 단체의 반대가 심하다	-	-
인권조례가 없더라도 다른 법률로 해결 가능	9	72
합 계	13	100.0

### 3) 인권조례가 필요한 대상

- 지역사회에서 현재 인권보호가 필요한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2-50>와 같다.
- 장애인 인권29명(28.4%), 국제결혼이주자 인권28명(27.5%), 이주 노동자 인권 24명(23.5%), 학생 인권 6명(5.9%), 노인인권 5명(4.9%), 저소득층 인권 5명(4.9%)순이다. 무엇보다도 국제결혼자이주자 인권이나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글로벌화(globalization)에 따른 사람과 노동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제3세계 저임금 노동자들이나 결혼이민여성들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부각되는 사회적 사안으로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제시와 실천의 필요성에 대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 인권조례의대상



<표2-50> 인권조례가 필요한 대상

(단위: 명, %)

구 분	빈도(%)	
장애인 인권	29	28.4
학생 인권	6	5.9
외국인 근로자 인권	24	23.5
국제결혼 이주자 인권	28	27.5
동성애자 인권	-	-
여성인권	2	1.4
새터민 인권	-	-
아동인권	3	2.9
노인인권	5	4.9
저소득층 인권	5	4.9
합계	1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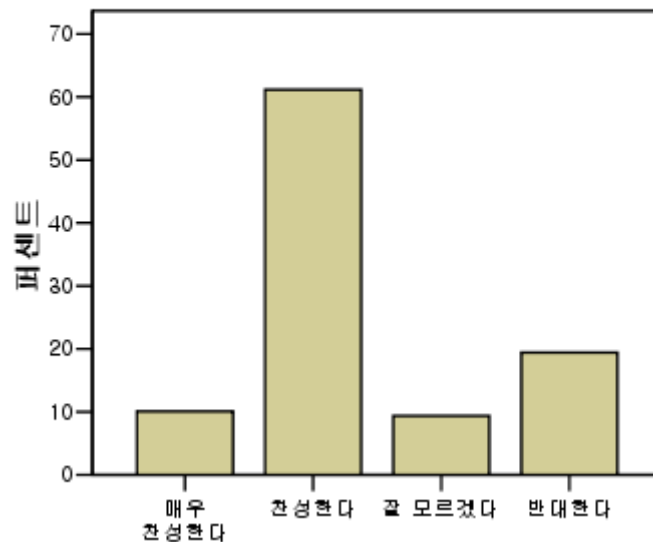
## 제8절 국제결혼 관련 지원조례에 대한 견해

### 1. 국제결혼지원 조례

#### 1) 국제결혼 비용 지원 조례

- 최근 우리지역의 몇몇 자치단체가 농어촌 총각의 국제결혼을 돕기 위해 ‘국제결혼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관한 견해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2-51>와 같다.
- 국제결혼비용 지원조례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찬성한다’ 99명(71.1%), ‘잘 모르겠다’ 13명(9.2%), ‘반대한다’ 27명(19.1%)로 나타났다. 우리지역사회에서 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에 대해 높은 찬성률이 나타난 것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시작된 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국제결혼 이제는 일반적인 결혼형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국제결혼비용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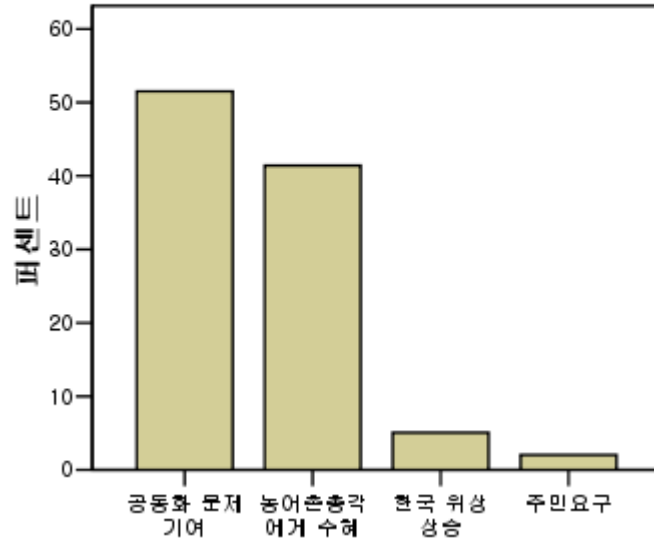
<표2-51> 국제결혼비용 지원 조례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구 분	빈도(%)
매우 찬성한다	14(9.9)
찬성한다	85(60.3)
잘 모르겠다	13(9.2)
반대한다	27(19.1)
매우 반대한다	-
무응답	1(0.7)
합 계	140(100.0)

## 2. 국제결혼 비용 조례가 필요한 이유

- 국제결혼 비용 조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99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2-52>와 같다.
- 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농·어촌 공동화 문제완화에 기여한다.’ 51명(51.4%), ‘농어촌 총각에게 수혜가 돌아간다.’ 41명(41.4%)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사회의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른 자구책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농어촌 미혼남성의 결혼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대안이기도 하다.

### 찬성이유



<표2-52> 국제결혼 비용 조례가 필요한 이유 (단위: 명, %)

구 분	빈도(%)
농어촌 공동화 문제에 기여한다	51(51.4)
농어촌 총각에게 수혜가 돌아간다	41(41.4)
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상승시킨다	5(5.1)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2(2.0)
합 계	9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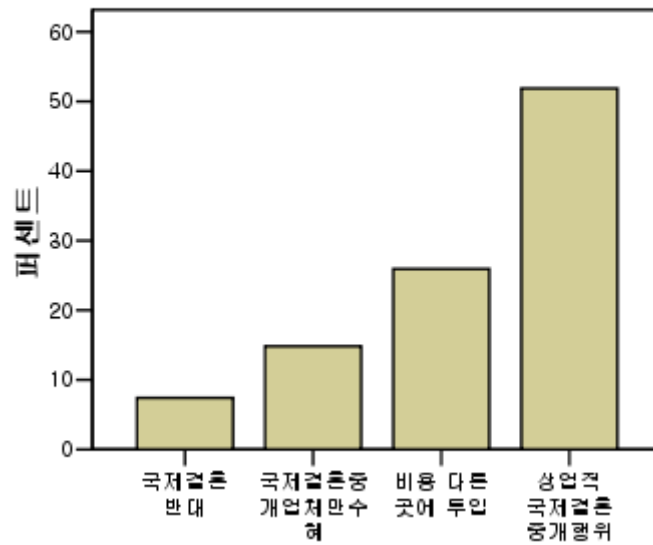
☞ 국제결혼비용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27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2-53>과 같다.

○ 지역사회에서 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에 대해 반대한 27명이 응답한 이유로는 첫째,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행위일 뿐이다 14명(51.9%), 둘째, 지자체의 비용이 다른 곳에 투입되어야 한다 7명(25.9%), 셋째, 수혜자는 농민이 아니라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4명(14.8%)순으로 응답하였다.

○ 이는 기존의 국제결혼 알선업체에 대한 관리통제기관의 부재와 지방자치단체에

서 농촌총각 결혼보내기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내 결혼알선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신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국제결혼 알선 업체에 대한 관리 통제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이유



<표2-53> 국제결혼 비용 조례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빈도(%)
국제결혼 자체를 반대한다	2(7.4)
수혜자는 농민이 아니라 국제결혼중개업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4(14.8)
지자체의 비용이 다른 곳에 투입되어야 한다	7(25.9)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행위일 뿐이다	14(51.9)
합계	27(100.0)

## 제9절 차별금지법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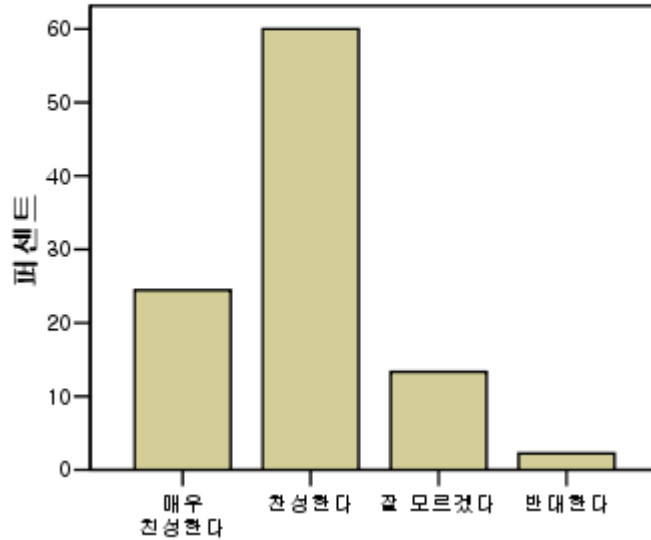
최근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 성별·장애·나이·인종·종교·학력·전과·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 1. 차별 금지법에 관한 내용

#### 1) 차별 금지법에 관한 의견

- 최근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표2-54>과 같다.
- 지방의회 의원들이 생각하는 최근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매우 찬성한다.’ 33명(23.4%), ‘찬성한다.’ 81명(57.4%)로 80.8%가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18명(12.8%)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중 하나는 우리사회의 변화된 입법조항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먼저 이해하고 지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자체 내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잘 모르겠다’(12.8%)는 응답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 차별금지법



<표2-54>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빈도(%)
매우 찬성한다	33(23.4)
찬성한다	81(57.4)
잘 모르겠다	18(12.8)
반대한다	3(2.1)
매우 반대한다	-
무응답	5(3.6)
합 계	14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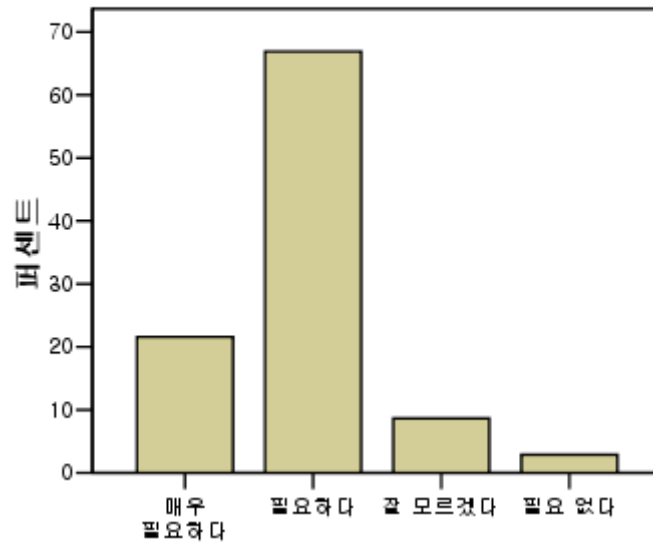
##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지표 및 보장에 관한 내용

### 1)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지표 및 보장에 관한 연구 개발의 필요성

- 최근 국가청렴도, 삶의 질 만족도 등 국가차원의 각종 지표들이 발표되거나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지표 및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연구와 지표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2-55>와 같다.
- 지방의회 의원들이 인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지표 및 인권보장 수준

에 대한 연구와 지표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 1410명 중 ‘매우 필요하다’ 30명(21.3%), ‘필요하다’ 93명(66.0%), ‘잘 모르겠다’ 12명(8.5%)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지표와 인권보장 연구에 대한 81.3%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보장연구에 대한 필요성



<표2-55>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지표 및 인권보장 대한 연구 (단위: 명, %)

구 분	빈도(%)
매우 필요하다	30(21.3)
필요하다	93(66.0)
잘 모르겠다	12(8.5)
필요없다	4(2.8)
매우 필요없다	-
무응답	1(0.7)
합 계	14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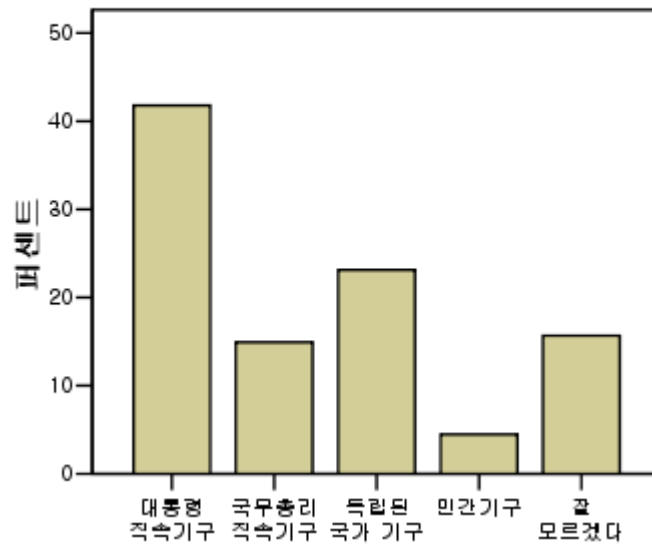


## 제10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관련 사항

### 1. 지역사무소 위상에 대한 인지정도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지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56>와 같다.
-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대통령 직속기구(41.8%), 독립된 국가기구(23.1%), 잘 모르겠다(15.7%), 국무총리 직속기관(14.9%), 민간기구(4.5%)순으로 나타남.

국가인권위원회란



<표 2-56> 광주지역사무소의 지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대통령 직속기구	56(41.8)
국무총리 직속기구	20(14.9)
독립된 국가 기구	31(23.1)
민간기구	6(4.5)
잘 모르겠다	21(15.7)
합계	134(100.0)

## 2.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지역문제 대응방안

### 1) 지역사무소의 역할

- 광주지역사무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개방형 문항으로 처리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함. 이를 다시 재분류한 응답결과는 <표 2-57>와 같다.
-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인권침해 발생 시 접수, 처리하는 기관(24.52%), 인권관련 교육을 하는 기관(16.1%), 인권침해·차별을 구제하는 단체(12.6%), 지역 인권사태 파악 및 조사 해결(10.5%),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인권문제 실태파악 및 범시민 운동 주도하는 일(10.5%) 순으로 나타남.

<표 2-57> 지역사무소가 하는 일 (단위: 명, %)

구 분	빈도(%)
인권침해 발생 시 접수·처리하는 기관	35(24.5)
인권관련 교육을 하는 기관	23(16.1)
인권침해·차별을 구제하는 단체	18(12.6)
지역 인권사태 파악 및 조사 해결	15(10.5)
힘없는 사람들 인권 보호하는 국가기관	13(9.1)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인권문제 실태파악 및 범시민운동 주도하는 일	15(10.5)
인권관련 문제 발생 시 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일	14(0.7)
잘 모르겠다	5(3.6)
기타	2(1.5)
합 계	140(100.0)

### 2)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사무소 대응방식

-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사무소의 대응방식에 대해 개방형 응답을 받고 재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58>과 같다.
-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하는 일(25.9%), 문제의 원인규명과 진상규명의 철저한 조사(17.5%), 문제발생장소를 압박하여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14.0%), 관련 법안에 의한 법률적 대응(13.3%) 순으로 나타남.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 및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요구하는 것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 지역 사무소의 주된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표 2-58> 지역사무소의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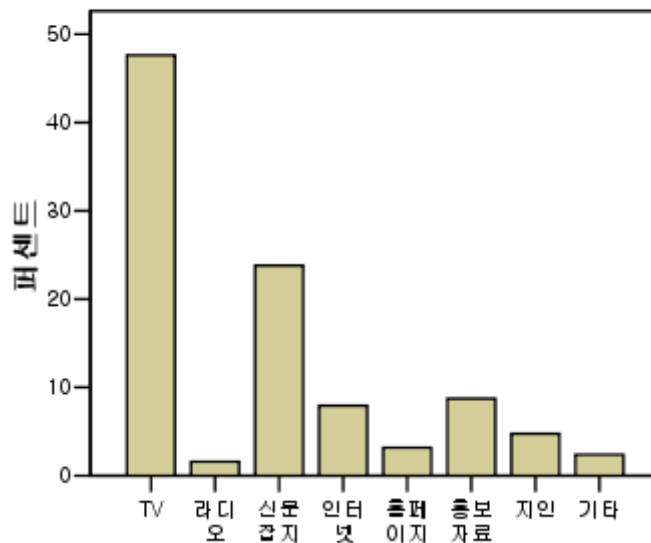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빈도(%)	
대응 방안	피해자의 입장에서 중재·조정하는 일	37	25.9
	문제의 원인규명과 진상규명의 철저한 조사	25	17.5
	문제발생장소를 압박하여 강력하고 적극적 대응	20	14.0
	관련 법안에 의한 법률적 대응	19	13.3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입장 대변한다.	12	8.4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게 사전에 교육한다.	11	7.7
	인권문제가 발생하면 합법적인 절차 사후처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시한다.	8	5.6
	홍보·언론활동과 제도적·사회적 대안 마련	5	3.5
	기타	3	2.1
	합 계	140	100.0

### 3.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지 정도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한 결과는 <표2-59>와 같다.
-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TV(47.6%), 신문·잡지(23.8%), 인터넷(7.9%),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8.7%), 지인 또는 주변사람들(4.8%), 기타(2.4%)순으로 조사되었고 언론매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79.3%였다.
- 언론매체를 통한 경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원인 중의 하나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언론홍보매체의 역할과 위상임을 알 수 있음.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언론매체를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회 어떻게 알고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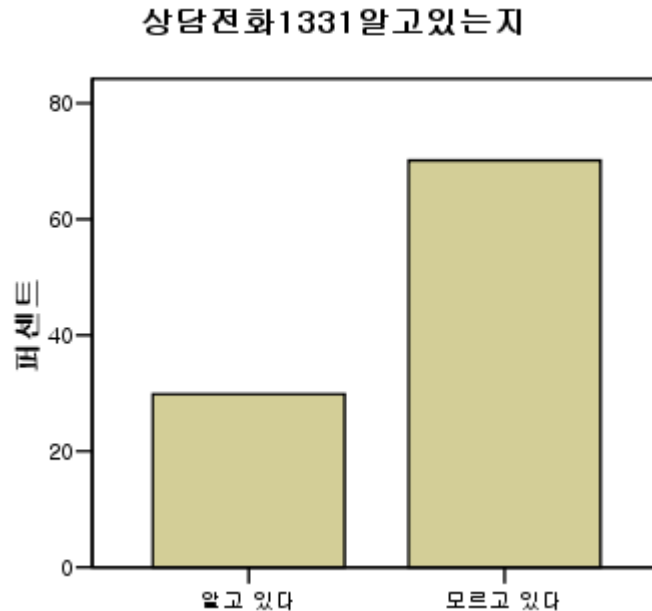
<표 2-59> 정보경로

(단위: 명, %)

구	분	빈도(%)
	TV	60(47.6)
	라디오	2(1.6)
	신문·잡지	30(23.8)
	인터넷	10(7.9)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4(3.2)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	11(8.7)
	지인 또는 주변사람들	6(4.8)
	기타	3(2.4)
합	계	126(100.0)

#### 4.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전화 인지여부

- 상담전화에 대한 인지여부의 결과는 <표 2-60>와 같다.
-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알고 있다'(29.9%), '모른다'(70.1%), 이는 40.2%의 매우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이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의회 의원 중 10명 중 7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전화 1331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는 체계적 설치 및 장소 문제와 홍보 등이며, 앞으로의 적극적 홍보와 전문적인 상담원 배치 활동들을 방법 중 하나 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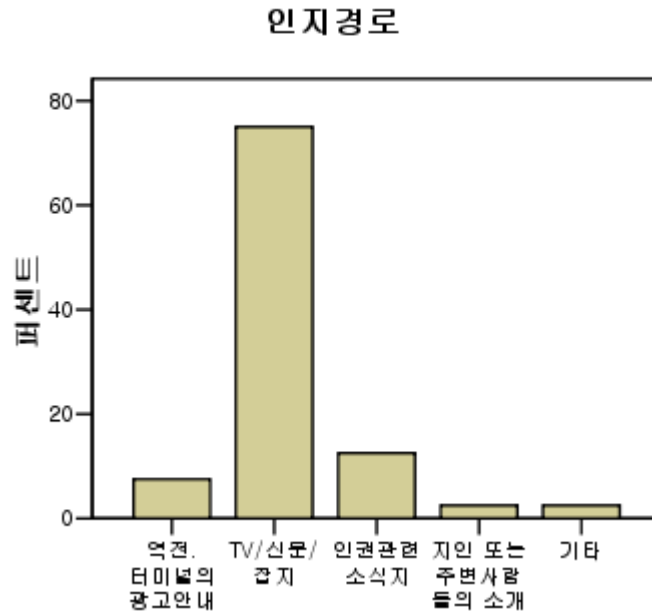
<표 2-60> 상담전화 인지여부

(단위: 명, %)

구 분	빈도(%)
알고 있다	40(29.9)
모른다	94(70.1)
합 계	134(100.0)

- 아울러, 알고 있다는 응답자들 중, 인지경로에 대한 조사결과 일반인은, TV·신문·잡지(55.1%), 인권관련 소식지(15.9%), 역전·터미널의 광고안내(13.0%)순으로 나타남.

- 알고 있다는 응답자들 중, 인지경로에 대한 조사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TV·신문·잡지(75.0%), 인권관련 소식지(12.5%), 역전·터미널의 광고안내(7.5%)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홍보는 TV·신문잡지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표 2-61> 상담전화 인지경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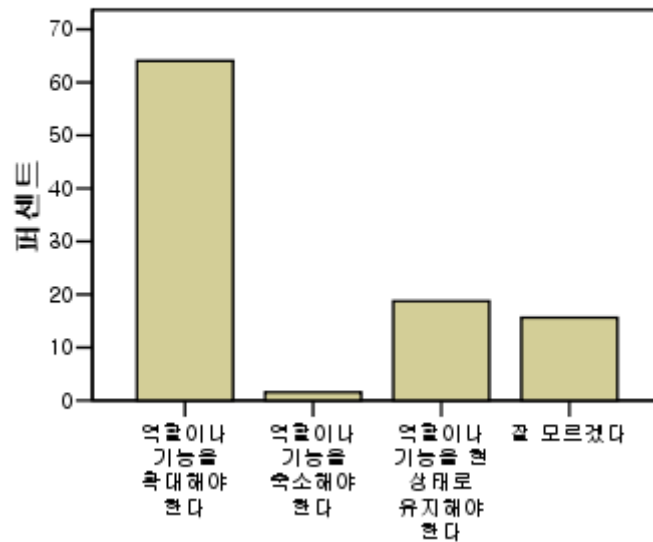
구 분	빈도(%)
역전·터미널의 광고안내	3(7.5)
TV·신문·잡지	30(75.0)
인권관련 소식지	5(12.5)
지인 또는 주변사람들의 소개	1(0.7)
기타	1(0.7)
<b>합 계</b>	<b>40(100.0)</b>

## 5.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 광주지역사무소의 앞으로 할일에 대해 개방형 문항으로 다양한 제안을 듣고자 함. 이를 재분류한 결과는 <표 2-62>와 같음. 역할과 기능, 확대되어야 될 활동결과는 <표 2-63>, <표 2-64>와 같음.

-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광주지역사무소의 역할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구제방법을 알려 준다(27.3%),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화 상담·면접(23.7%), 적극적인 홍보 및 개입(21.7%), 구금·다수인 시설의 수시방문을 통한 현장조사(15.4%)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본교육(7.0%), 순으로 나타남.

국가인권위원회역할이나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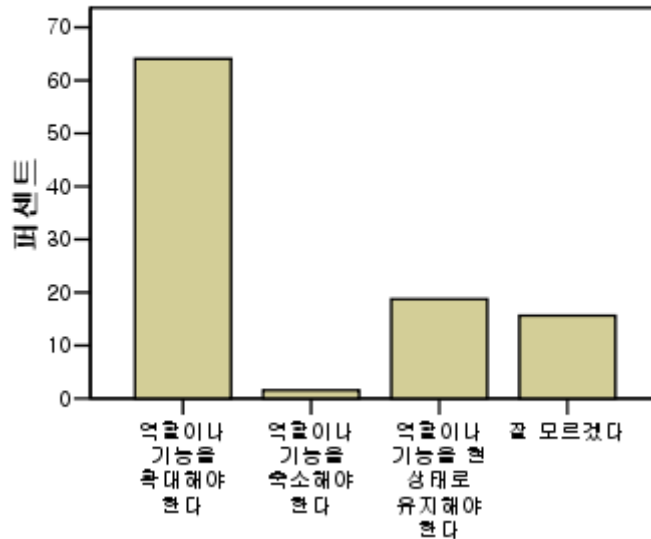
<표 2-62> 지역사무소의 할 일 (단위: 명, %)

구 분	빈도(%)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화 상담·면접	23(23.7)
구금·다수인 시설의 수시방문을 통한 현장조사	22(15.4)
국가인권위원회의 광주지역사무소의 역할 적극적인 홍보 및 개입	31(21.7)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구제방법을 알려 준다.	39(27.3)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본교육	10(7.0)
인권관련 정보제공	8(5.6)
기타	7(4.9)
<b>합 계</b>	<b>140(100.0)</b>

- 아울러, 광주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견해를 알아본 결과는 <표2-63>과 같다.
-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64.1%), 역할이나 기능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18.8%), 잘 모르겠다(15.6%), 순으로 나타남.

국가인권위원회역할이나기능



<표 2-63>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 (단위: 명, %)

구분	빈도(%)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82(64.1)
역할이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2(1.6)
역할이나 기능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4(18.8)
잘 모르겠다	20(15.6)
합계	12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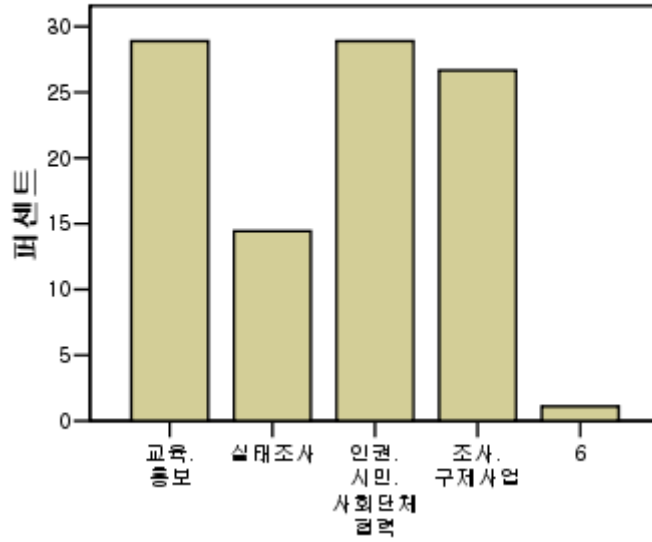
☞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확대되어야 사업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2-64>와 같다.

○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교육·홍보 (28.9%),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28.9%), 조사·구제사업(26.7%), 실태조사(14.4%) 등이다.

○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가 앞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의 내용은 교육·홍보 및 각 단위의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 인권 현안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하여야 할 것이다.



### 어떤기능과역할



<표 2-64> 확대되어야 할 활동 (단위: 명, %)

구분	빈도(%)
교육·홍보	26(28.9)
실태조사	13(14.4)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	26(28.9)
조사·구제사업	24(26.7)
기타	1(1.1)
합계	90(100.0)



□□

□□



---

---

## 제3장 결과 및 제언

---

---



## 제3장 결과 및 제언

-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지방의원들의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의원들의 지역사회 인권현안이나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의원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교육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개발하여 당선과 동시에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의식 함양과 실천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과 정책들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으로 인권문제가 발생한 모든 곳에 언제든지 의원들이 방문하여 실태를 평가하고 진상을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의원들은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지역차원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각 소위원회를 조직하고 조례안을 입안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방의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내의 인권문제가 해결되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원 의원들은 지역사회의 인권의식 함양과 지역민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창안하여 지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장치들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

□□



---

# 설 문 지

---





## 인권의식 조사 설문지 (지방의회 의원용)

지역: □□ - □□ ID □□□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에서는 창립2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권의식 정도를 파악하여, 우리지역사회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셔서 설문에 응해주신다면, 지역민의 인권의식함양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8조와 제9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전화 (062) 710-9711~6, FAX 710~9717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 8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본점 6층)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 현재 우리 지역사회의 인권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 2) 별로 심각하지 않다.
- 3) 그저 그렇다.
- 4) 대체로 심각하다.
- 5) 매우 심각하다.

2] 우리 지역사회 인권상황이 2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많이 나아졌다.
- 2) 조금 나아졌다.
- 3) 1년 전과 마찬가지로이다.
- 4)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 5) 잘 모르겠다.

3]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곳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군대
- 2) 검찰 / 경찰
- 3) 국가정보원
- 4)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 5) 요양원 / 복지원등의 각종 복지수용시설
- 6) 방송 및 언론기관
- 7) 기업 또는 법인 개인회사
- 8) 초/ 중/ 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 9) 지방자치단체
- 10) 각종사회단체
- 11) 기타 (        )

4]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권을 보호해줘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순서대로 두 집단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수용자
- 2) 각종복지시설의 수용자
- 3) 장애인



◎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8] 다음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식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에 일치하는 부분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① 매우 동의 한다	② 동의 한다	③ 중간이 다	④ 반대 한다	⑤ 매우 반대 한다
	여성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진학 등에서 일정비율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납세, 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학생에게 의무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시에 검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 할 수 있다					

문 항	① 매우 동의 한다	② 동의 한다	③ 중간이 다	④ 반대 한다	⑤ 매우 반대 한다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인 권을 보장해야 한다.					
출신학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우리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다음 각각의 사항 중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유형 중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순서대로 응답 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 검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연행·구금·심문하는 문제
- 2) 신문, 방송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문제
- 3)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및 생각,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
- 4)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 5) 공공기관, 언론, 인터넷, 서적 등에 개인의견 표현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 6)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 7) 공공기관, 대학 등이 개인의 자유로운 학문·예술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
- 8) 기타 ( )

◎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특정한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10] 다음 각각의 사항들 중에, 현재 우리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 중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순서대로 3순위까지 응답 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2) 종교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3) 장애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4)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5)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6)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7) 출신지역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8)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나 민족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9)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10) 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재혼, 사실혼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11) 한 부모가족(편부, 편모), 미혼모 가족 등 가족상황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12) 사상,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13)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14)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15) 과거,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16) 임신, 출산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 17) 기타 ( )

◎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다음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문항 중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시는 것을 2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1)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
- 2)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 3)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
- 4)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이용과 관련한 차별
- 5)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
- 6)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
- 7) 상점, 음식점,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 이용과 관련된 차별
- 8)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된 차별
- 9) 기타 ( )

◎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침해·차별 구제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순서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1)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한다.
- 2)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한다.
- 3)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4)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 5)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 6)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한다.
- 7)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
- 8) 기타 ( )

◎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관련 의회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민들은 법령보다도 조례에 더 많은 이해관계를 갖게 되며, 인권침해 또는 차별이 발생할 소지도 조례에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소속 자치단체의 조례 가운데 인권침해 또는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 1) 있다.
- 2) 없다.

☞13-1] (①에 답하신 분에 해당) 인권침해 또는 차별적인 조례나 규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
- 2) 자치입법에 관한 통제장치의 결여
- 3) 주민의 요구에 추종
- 4) 기타( )

14]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인권의 중요성에 관하여 공감하여, 주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민간차원의 인권보장활동을 보조하면서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하나로 지역차원의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소속하시는 자치단체에 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 2) 필요하다
- 3) 잘모르겠다.



- 4) 필요없다.
- 5) 전혀 필요없다.

☞14-1】 (④ 또는 ⑤에 답하신 분에 해당) 인권조례가 필요없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지역의 인권문제가 없다.
- 2)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 3) 기업이나 단체의 반대가 심하다.
- 4) 인권조례가 없더라도 다른 법률로 해결할 수 있다.

☞14-2】 (① 또는 ②에 답하신 분에 해당) 현재 가장 필요한 인권조례의 대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장애인 인권
- 2) 학생 인권
- 3) 외국인 근로자 인권
- 4) 국제결혼 이주자 인권
- 5) 동성애자 인권
- 6) 여성 인권
- 7) 새터민(탈북자) 인권
- 8) 아동 인권
- 9) 노인 인권
- 10) 저소득층

☞14-3】 위와 같이 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5】 최근 우리지역의 몇몇 자치단체가 농어촌 총각의 국제결혼을 돕기 위해 ‘국제결혼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관하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1) 매우 찬성한다.
- 2) 찬성한다.
- 3) 잘 모르겠다.
- 4) 반대한다.
- 5) 매우 반대한다.

15-1】 (① 또는 ②에 답하신 분에 해당)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농어촌의 공동화 문제에 기여한다.
- 2) 농어촌총각에게 수혜가 돌아간다.
- 3) 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상승시킨다.
- 4)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15-2】 (④ 또는 ⑤에 답하신 분에 해당)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국제결혼 자체를 반대한다.
- 2) 수혜자는 '농어민'이 아니라 '국제결혼중개업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 3) 지자체의 비용이 우선 다른 곳에 투입되어야 한다.
- 4)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행위일 뿐이다.

16】 최근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종교 학력 전과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찬성한다.
- 2) 찬성한다.
- 3) 잘 모르겠다.
- 4) 반대한다.
- 5) 매우 반대한다.

☞16-1】 (① 또는 ②에 답하신 분에 해당) 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6-2】 (④ 또는 ⑤에 답하신 분에 해당) 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7】 최근 국가청렴도, 삶의 질 만족도 등 국가차원의 각종 지표들이 발표되거나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지표 및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연구와 지표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 2) 필요하다.
- 3) 잘 모르겠다.
- 4) 필요 없다.
- 5) 매우 필요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가 어떤 기구라고 알고계십니까?

- 1) 대통령 직속기구
- 2) 국무총리 직속기구
- 3) 독립된 국가 기구
- 4) 민간기구
- 5) 잘 모르겠다.

2]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3]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사회문제(예를 들면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 하이스코 노동조합 시위 과잉진압 문제 등등)가 발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4]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고 계십니까?

- 1) TV
- 2) 라디오
- 3) 신문/잡지
- 4) 인터넷
- 5)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 6)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
- 7) 지인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 8) 기타 ( )



- 1)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
- 2)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 3)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원교육
- 4)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
- 5) 기타( )

9]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곳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경찰
- 2) 교도관 등 구금·보호시설 공무원
- 3) 검찰, 판사, 변호사 등 사법관계자
- 4) 국가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
- 5)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 6) 군인
- 7) 방송/신문 등 언론인
- 8)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종사자
- 9) 의사, 교수 등의 전문직 종사자
- 10) 교사
- 11) 학생
- 12)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 13) 기타 ( )



9] 선생님 닉의 한 달 가구소득은 얼마이신가요?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49만원
- ③ 150~199만원      ④ 200~249만원
- ⑤ 250~299만원      ⑥ 300~349만원
- ⑦ 350~399만원      ⑧ 400만원 이상
- ⑨ 기타(                )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